

이 研究는 1992年度 韓國海洋大學校
學術振興會의 支援에 의하여 遂行된 研究 結果임

우리 나라 割賦販賣制度의 實證的 考察

申 鍾 澈 *

A Positive Study on the Installment Selling System

SHIN JONG CHEOL

第 1 序

1. 考察의 目的

우리 나라에서도 1957년대 以後부터 割賦販賣去來가 始作되었고, 1960년대에 들어서
자 産業化에 따른 商品의 大量生産과 더불어 電子製品, 衣類, 書籍 등 廣範圍한 部
分에 걸쳐 相當히 많이 盛行되고 있다.¹⁾ 이 制度는 代理店 등의 店鋪를 통하여 販賣
하는 경우도 있고 또한 販賣員이 家庭 또는 職場을 訪問하여 商品을 販賣하는 경우도
많다. 이 割賦販賣去來가 활기를 띤 것에는 60년대의 産業化에 따른 大量生産에도 基
因하지만 그에 따른 國民의 所得水準이 向上되어 消費가 全體的으로 相當히 높은 水準

* 韓國海洋大學校 社會科學大學 副教授

1) 李銀榮, 債權各論, 博英社, 1989, 239~240면.

柳順鉉, 割賦販賣에 관한 研究, 淸州大學校 博士學位論文, 1987, 22~23면.

으로 向上되었고, 개개인들의 多樣化 個性화된 消費行動의 生活樣式(예컨데 文化生活을 營爲하기 위하여 娛樂用品이나 趣味 嗜好品 比較的 高價의 耐久財 등을 購入하는 現狀) 및 廣告와 熟練된 販賣員들의 宣傳과 金融機關의 介入을 통한 消費者信用 등으로 이 去來는 지금 대단히 盛行되고 있다.²⁾ 이에 우리 나라도 1990년에 割賦販賣 등 特殊賣買에 관한 法律이 制定되어, 割賦販賣에 관한 部分的인 規制가 있었으나, 1991년 12월에 割賦去來에 관한 法律을 制定하여 1992년 7월부터 實施하고 있다. 그리하여 去來秩序의 確立과 同時에 消費者의 保護도 疎하고 있다. 이에 實去來에 있어서 約款을 통하여 불 때 어느 정도 지켜지고 있으며 保護程度는 어떠한가를 實證的 考察을 통하여 調査 分析하여 立法的 補完 및 發展에 研究의 目的을 두고자 한다.

2. 考察方法 및 對象

割賦販賣의 契約書 및 去來約款과 消費者의 割賦去來의 實態調査를 하였다.

1) 割賦販賣契約書 및 去來約款의 蒐集

(1) 期間 및 方法 : 1991년 10월부터 始作하여 92년 10월까지 蒐集하였으며, 그 方法은 消費者와 學生을 통하여 하였다.

(2) 蒐集의 分類 및 數

地域의 範疇은 釜山을 爲主로 하여 서울, 大邱, 馬山 등에서 蒐集하였고, 契約書와 去來約款의 數는 40通 이었다. 그 具體的 內容은 다음과 같다.

書籍 5通, 테이프 3通, 電子製品 10通, 그릇 2通, 自動車 5通,

家具 2通, 피아노 3通, 오디오 2通, 衣類 3通, 暖房器具 2通, 기타 3通

(3) 調査對象者 數와 地域

2) John Kenneth Galbraith, The Affluent Society (Harmous worth : Penguin, 1970), 167면. Galbraith 교수는 大量生産, 大量販賣의 社會에서 大衆은 金錢을 借用하여 物件을 사게 된다고 말하였다.

調査對象者 數는 총 160명이고 對象地域은 釜山인 경우 區單位로 하였고, 나머지 地域은 任意 選擇하였다.

釜山

영도구: 55명, 남구: 17명, 동구: 6명, 서구: 7명, 해운대구: 4명,
강서구: 2명, 동래구: 7명, 북구: 5명, 부산진구: 10명, 중구: 1명,
금정구: 5명, 사하구: 8명, 馬山: 18명, 大邱: 5명, 서울: 13명

(4) 調査對象者와 方法

가능한 한 成年者를 對象으로 하여, 調査員은 大學生이 미리 作成된 說問紙를 가지고 interview의 方法으로 하였다.

第 2. 實際去來界의 割賦販賣契約書의 內容

1. 序說

割賦販賣는 賣渡人이 代金を 完給받기 前에 買受人에게 미리 商品을 引渡함으로써 買受人에게 相當期間 信用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賣渡人은 代金確保에 不安을 느끼게 되어 여러 가지로 債權回收의 保障方法을 講究한다.

첫째, 賣渡人은 債權을 確保하기 위하여 約款을 設定한다. 본래의 代金債權의 實效를 기하기 위하여 目的物의 所有權을 賣渡人에게 留保하고 連帶保證人이나 擔保物을 要求하고, 目的物의 讓渡·擔保 및 目的物의 交換 返品の 禁止特約을 정하기도 한다. 여기서 買受人은 所有者처럼 보이고 反面에 賣渡人은 擔保權者의 地位를 가지는 것처럼 보인다.³⁾

둘째, 賣渡人은 買受人의 債務不履行을 對備하기 위하여 約款을 정한다.

3) Heinrich Mayrhofer, Das Abzahlungsgeschäft nach dem neuen Ratengesetz, Spriger-verlag, Wien-New-York, 1966, S. 13

買受人이 割賦金의 支給을 遲滯하거나 履行을 하지 않을 것에 對備하기 위하여 嚴格한 去來條件을 정하는 約款으로서 契約解除, 損害賠償 및 期限利益喪失條項을 정하고 있다.

세제, 賣渡人의 權利의 實現을 容易하게 하기 위한 約款을 정한다.

즉 代金債權이나, 損害賠償債權 등의 實現을 簡便하게 하기 위하여 不利益의 경우 異議不提起 特約이나 買受人이 住所를 變更하거나 物件의 所在 場所를 移轉하면 즉시 賣渡人에게 通報하여야 한다는 特約 또는 物件의 任意回收條項 및 訴訟에 對備하여 賣渡人에게 有利한 管轄의 合意條項 등이다.

네째, 그러나 割賦去來法이 施行되고 있는 現今에는 위의 內容들이 契約內容上에 包含되어 있지만, 目的物의 交換 및 返品の 禁止條項, 自力回收條項, 다른 商品任意回收條項, 異議不提起條項은 約款의 條項으로 찾아볼 수 없으며 대신 裁判管轄條項(管轄合意의 制限), 標準損率條項, 價格變動條項 割賦手數料 料率條項, 信用情報交換條項, 撤回權條項, 中途一時拂納入條項 및 買受人의 抗辯權 條項등이 새로이 包含되어 있다. 따라서 위 契約書 內容들을 具體적으로 檢討 分析하기로 한다.

2. 契約書의 分析

우리 나라의 割賦販賣의 契約書 名稱은 賣買契約書, 日月賦契約書, 割賦契約書, 割賦販賣約定書, 信用販賣 賣買契約書 등 多樣하다. 이들 契約書의 名稱여하를 不問하고 그 內容은 割賦販賣임이 明白하다. 왜냐하면, 割賦販賣法이 施行되고 있는 지금에 있어서 約款의 內容들이 同法의 規定事項에 맞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名稱의 統一性を 기하는 것이 割賦販賣의 去來秩序 및 消費者保護 側面에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3. 契約約款의 內容

約款의 內容은 前述한 바와 같이 賣渡人의 債權을 確保하기 위한 約款, 買受人의 債務不履行을 對備하기 위한 約款, 賣渡人의 權利實現을 容易하게 하기 위한 約款 즉 目的物의 代金債權이나 損害賠償債權의 實效성을 얻기 위한 것과 去來秩序 및 消費者保護를 위하여 割賦去來法이 規制하고 있는 事項 등이다.

1) 賣渡人의 債權을 確保하기 위한 約款

(1) 所有權留保條項

約款 중에는 “買受人이 約定代金を 完拂하였을 때 約定物品에 대한 所有權을 取得하게 됩니다”⁴⁾ 또는 “月賦分納代金 完納時까지 物品에 대한 所有權을 取得하지 못하고 當該物品을 保管키로함”.⁵⁾ 또는 “代金 完納時까지 所有權은 事業者에게 있으며”⁶⁾ 라는 條項은 이른바 “所有權留保約款”인 것이다. 그 法律的 性質은 契約書에 明示되고 賣渡人의 意思表示가 明確한 경우 停止條件附 所有權移轉이다.⁷⁾ 따라서 契約書에 明示되

- 4) 삼성전자주식회사, 물품대금 불입약정서, 제 2조 1항
대우전자주식회사, 대금불입약정서, 제 2조 : 아남전자, 대금불입
약정서, 제 2조 1항; 금성사, 금성 팩토링 금융매매약관, 제 4조
- 5) 부산영창피아노사, 계약서, 제 4조
- 6) B. B. C. 영어연구원, 割賦契約書, 제 7조
성림사, 日月賦拂入契約書, 제 4조; 명성오디오, 賣買契約書, 제 2조
코오롱신용판매주식회사, 信用販賣 賣買契約書, 제 2조
- 7) 李銀榮, 債權各論, 博英社, 1989, 245면.
郭潤直, 再全訂版, 債權各論, 博英社, 1984, 259면.
崔鍾吉, 所有權留保附賣買의 法律關係에 관한 考察, 法學, 제 9권 2호,
서울대, 1972, 62면.
金基洙, 所有權留保附賣買와 所有權의 歸屬, 考試界,
1976년, 12월호, 65면.
金容漢, 擔保制度로서의 所有權留保, 考試研究, 1986, 2월호, 29면
權五乘, 所有權留保附賣買, 考試研究, 1986년, 11월호, 35면.
嚴英鎮, 割賦販賣의 法律關係, 大旺社, 1985, 47면 및 142면.
同, 割賦販賣에 있어서의 所有權留保의 性質, 考試研究,
1986년, 2월호, 82면.
柳順玆, 割賦販賣에 관한 研究, 淸州大學博士學位論文, 1987, 79면.
李根植, 割賦販賣에 관한 問題點, 法曹 27卷 第 1號, 1978, 53면.

어 있지 않은 경우는 效力이 없고 또한 明示되어 있다 하더라도 賣渡人의 意思表示가 明確하지 않은 경우 停止條件附로 理解할 必要없이 解除條件附所有權移轉으로 새겨야 한다. 그 理由는 첫째, 所有權留保約款에 관한 特約이 있는 경우 그 內容 등의 事項은 契約書에 記載하여 買受人에게 交付하여야 하며(割賦去來法 제 4조) 또한 以上の 明示·說明義務에 違反하는 경우 그 約款은 契約의 內容으로 되지 않으며(約款規制法 제 3조 3항), 둘째, 그 內容이 不確實한 경우에는 賣渡人과 買受人간의 特約이 없는 한 그 契約內容은 어떠한 경우에도 買受人에게 不利하게 解釋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規定하고 있다(同法 제 4조 4항). 따라서 契約書에 明示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勿論 賣渡人의 意思表示가 明確하지 않은 경우도 說明義務 違反으로 效力을 否定하여야 하고, 所有權留保의 特約이 있더라도 意思表示(停止條件附로 한 것인가 아니면 解除條件附로 한 것인가)의 內容에 紛爭이 提起되는 경우, 割賦販賣의 法律構成을 讓渡擔保의 法律構成의 逆理(讓渡擔保 類推說)로 생각하여⁸⁾ 買受人은 目的物의 所有者이며 따라서 買

同, 割賦販賣, 考試研究, 1981 10월호, 118면.

金基善, 特殊한 賣買, 考試界 제 25권 제 9호, 1980년. 9월, 44면.

金顯泰, 新稿債權法各論, 一潮閣, 1969, 141면.

幾代通, 割賦販賣-所有權留保-, 契約法大系 II, 東京, 有斐閣, 1970, 293면.

神田博司, “割賦販賣”, 田中實, 山本進一編, 增補版 債權總·各論,
-重要問題の解説-, 東京法學書院, 1977, 356면.

柚木馨編, 注釋民法(14), 東京, 有斐閣, 1980, 68면.

柚木馨·高木多喜男, 擔保物權法(新版), 東京, 有斐閣, 1973, 613면.

末川博, 月賦販賣と所有權留保, 債權(末川博) 法律論集III,

東京, 岩波書店, 1970, 305면.

神崎克良, 所有權留保賣買とその展開, 神戸法學雜誌, 14卷 3號, 1964, 483면.

神田宗吉, 所有權留保賣買における法律關係, 上智法學論集 第 20卷 2號,
200면. 이하

Serick, Eigentumsvorbehalf und Sicherungübertragung.

Bd I 1963, SS116, 412

Hein Mayhofer, a, a, 0, S. 21.

Ostler-Weider, Abzahlungsgesetz, 6. Aufl., Berlin-New-York, 1971, S. 340.

8) 李銀榮, 前掲書, 246-247면. 張庚鶴, 物權法, 法文社, 1987, 924면.

金基洙, 前掲論文, 67면. : 嚴英鎮, 前掲書, 144면.

李根植, 前掲論文, 63면. : 金容漢, 前掲論文, 29면

幾代通, 前掲論文, 294면

俗川久, 動産割賦買契約における債權擔保のための諸條項と問題點,
法學雜誌, 第 10卷 3號, 1964, 66면.

受人은 제3자와의 關係에서 目的物의 處分權을 갖는다. 反面에 買受人의 代金債務不履行의 경우 賣渡人은 目的物에 대하여 優先辨濟를 받을 權利가 있고, 또한 清算(目的物 價額에서 未拂代金 및 利子를 뺀 金額을 買受人에게 返還)과 同時履行으로 目的物의 所有權을 移轉해 줄 것을 要求할 權利(一種의 豫約完結權)를 갖고⁹⁾, 賣渡人의 債權者나 破産管理人은 買受人에 대하여 未拂代金債務의 讓渡擔保權만을 實行할 수 있다. 이에 解除條件附所有權移轉說은 債務不履行을 解除條件으로 하여 契約과 同時에 所有權은 買受人에게 歸屬되고, 買受人은 目的物의 所有權者이다. 따라서 買受人은 當然히 目的物에 대한 處分權을 가진다. 만약 買受人이 債務不履行時 所有權은 賣渡人에게 當然히 復歸하므로 賣渡人(所有權에 기한 物權的 請求權 즉 目的物 返還請求權을 갖는다). 위의 兩說은 法律構成의 過程이 類似하며 따라서 所有權留保의 法的 性質을 반드시 停止條件附로 새길 理由가 없다. 그리고 割賦販賣에 있어서 所有權留保條項이 必須的 要件도 아니며,¹⁰⁾ 자동차의 賣買契約內容의 경우는 이 條項에 관한 直接的인 規定은 없고, 連帶保證人設定條項 根抵當設定條項¹¹⁾ 保證保險契約締結¹²⁾ 등으로 賣渡人의 債權을 確保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所有權留保條項은 賣渡人의 代金債權確保를 위하여 가장 널리 利用되고 있는 方法으로서(賣買商品과 代金債權의 牽連關係를 原因

9)李銀榮, 前掲書, 247면.; 金容漢, 前掲論文, 29-30면.

10)Ostler-Weider, a. a. O., SS. 584-585

우리 나라의 自動車 割賦販賣에 있어서는 본 조항은 거의 없으며 그대신 連帶保證人設定條項, 根抵當設定條項 등으로 債權을 擔保하고, 保證保險契約締結, 信用提供者를 통한 契約을 締結하기 때문이다. (대우자동차 매매계약서, 현대자동차 매매계약서, 쌍용자동차매매계약서, 주식회사 기아산업 자동차매매계약서등)

11)대우자동차주식회사, 자동차매매계약서, 제 15조 2항 1~2호
현대자동차서비스주식회사, 자동차매매계약서, 제 15조 2항 1~2호
쌍용자동차주식회사, 자동차(중기)매매계약서, 제 15조 2항 1~2호
주식회사 기아산업, 자동차(중기)매매계약서, 제 15조 2항 1~2호

12)쌍용자동차주식회사, 자동차(중기)매매계약서, 제 15조 2항3호
현대자동차서비스주식회사, 자동차매매계약서, 제 15조 2항 3호
대우자동차주식회사, 자동차매매계약서, 제 15조 2항 3호
주식회사 기산, 자동차(중기)매매계약서, 제 15조 2항 3호

으로 한 簡便한 擔保方法이므로) 대부분의 契約書에는 約款規定으로 明示되어 있고(契約書 作成時 同法 施行規則 제 3조 1항 1~2호의 規定에 따라 적색으로 記載하고 테두리를 쳐야 한다), 그리고 停止條件附 所有權移轉인 경우 賣渡人은 그 契約을 解除하고 그 目的物의 返還을 請求할 수 있다(割賦販賣法 제 8조 3항)

(2).讓渡·擔保·貸與 등의 禁止條項

約款에는 “賣渡人의 承認없이 제 3자에게 讓渡·擔保提供·貸與 기타 어떠한 處分도 할 수 없다”.¹³⁾ “所有權이 移轉되기까지는 타인에게 賣買 質貸 質權設定¹⁴⁾ 등을 할 수 없음” 등으로 表示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特約은 善良한 風俗 기타 社會秩序에 반하지 않는 한 有效하다고 할 것이다.¹⁵⁾ 그러나 擔保權者의 擔保目的의 實現을 위한 合理的인 範圍를 크게 逸脫하는 경우에는 無效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¹⁶⁾ 이러한 特約 때문에 買受人의 使用·收益·處分의 本質이 變更되는 것도 아니며,¹⁷⁾ 다만 當事者 사이의 債權的 效力을 갖는 데 不過하다.¹⁸⁾ 따라서 買受人은 貸與·讓渡하거나 擔保를 提供

13)태광에로이카, 일부불입계약서, 제 2조

명성오디오, 매매계약서, 제 2조 ; 중앙일보사, 도서구입계약서,

제 4조 ; BBC영어연구원, 할부계약서, 제 7조

주식회사 금성사, 금성 팩토링 매매약관, 제 6조 1항

14)현대자동차서비스 주식회사, 자동차매매계약서, 제 12조 2항
부산영창피아노사, 계약서, 제 5조.

Language Consultant, Factoring식 구입계약서, 제 2조 1항.

대우자동차주식회사, 매매계약서, 제 12조 2항

코오롱신용판매주식회사, 신용판매 매매계약서, 제 2조 2항

삼성전자주식회사, 대금불입약정서, 제 2조 2항

쌍용자동차주식회사, 자동차(중기)매매계약서, 제 12조 2항

주식회사 기산, 자동차(중기)매매계약서, 제 12조 2항

대우전자 주식회사, 대금불입약정서, 제 2조 후단

아남전자, 대금불입약정서, 제2조2항

15)郭潤直, 前掲債權各論, 260면.; 嚴英鎭, 前掲書, 204면.

權五乘, 前掲論文, 41면.; 柚木馨, 注釋民法(14), 東京, 有斐閣, 1980, 63면.

16)安永正昭, 前掲論文, 375~376면.

17)打田駿一·稻村良平, 割賦販賣法, 東京, 第一法規出版株式會社, 1974, 119면.

18)李銀榮, 前掲書, 246면.; 郭潤直, 前掲債權各論, 262면.

金容漢, 前掲論文, 29면.; 崔鍾吉, 前掲論文, 74면.

할 수 있으며, 19) 賣渡人에 대하여는 買受人의 이같은 行爲는 債務不履行이 되고, 賣渡人으로서는 그 行爲를 理由로 하여 契約을 解除할 수 있을 것이다. 賣渡人이 契約을 解除한 경우 買受人이 目的物을 返還할 수 없게 되면 그 損害를 賠償하여야 할 것이다. 20) 이같은 結論의 到達點은 같으나 그 論據 過程에서 理論的 差異를 두고 있는 3가지의 說이 있다. 分說하면 다음과 같다.

①. 설은 割賦販賣에 있어서 目的物의 所有權은 賣渡人이 留保하고 있으므로 買受人은 目的物에 處分權은 없다. 따라서 買受人의 讓渡·入質 등의 處分行爲는 物權的으로 無效이며, 21) 相對方은 處分 目的物이 動産인 경우 善意取得의 要件(民法 제 249조)을 갖춘 경우를 除外하고는 賣渡人으로부터 目的物을 回收당한다. 이 論據에 의하면 處分行爲는 物權的으로는 無效라고 하였다. 따라서 買受人이 目的物을 讓渡하였다 하여 代金の 支給을 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買受人의 當該 處分行爲에 의한 物權的 行爲만이 無效이고 債權行爲는 有效하다고 解釋하여야 할 것 같다. 이리하여 買受人은 賣渡人에게 所有權이 留保되어 있는 物件을 自己의 이름으로 제3자에게 讓渡할 權限을 갖는 것이 된다. 22)이같은 論據는 미국統一商法典 제 9.311조에 의하여도 認定되고 있다. 그 內容은 “擔保物에 대한 債務者의 權利는 讓渡를 禁止하거나 또는 債務不履行을 事由로 하는 擔保契約의 條項에 不拘하고 任置 또는 非任置로 讓渡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이리하여 債務者의 讓渡性은 認定되며 賣渡人은 買受人의 代金遲滯 등의 事由가

李根植, 前掲論文, 67면: 同, 前掲「割賦販賣」, 125면.

19)李銀榮, 前掲書, 246면.

金容漢, 前掲論文, 29면.

20)金容漢, 前掲論文, 29면.; 郭潤直, 前掲債權各論, 262면.

李根植, 前掲論文, 67면. 同, 前掲“割賦販賣”, 125면.

반대: 權五乘, 前掲論文, 43~44면.; 安永正昭, 前掲論文, 383면.

반대요지는 점유가 직접적으로 제 3자에게 이전하는 매수인의 처분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21)幾代通, 前掲論文, 296면.; 神田博司, 前掲論文, 358면.

石田文次郎, 擔保作用よる見たる所有權留保契約, 法學新報,

第41卷6號, 1931, 855면.

22)Serick, a. a. O., S. 153.

Corman, Sale and Secured Financing, 1960, p. 513

있으면 期限利益의 喪失, 契約의 解除, 損害賠償 등에 의하여 保護받을 뿐이다. 결국 이 論據도 買受人의 處分性を 認定하는 結果이나 買受人의 投下資本 回收를 圓滑히 하는 것을 沮害하고 제3자의 保護에 未洽하다는 缺點이 있다.

②. 說은 買受人에게 物權的 期待權(dingliches Anwartschaftsrecht)을 認定하는 論據이다.

買受人은 그 目的物에 대한 所有權을 取得하는 것이 아니라, 그 目的物을 占有·使用할 수 있는 權利를 取得하며 나아가 代金の 完給이라고 하는 停止條件의 成就로 法律上 當然히 完全한 所有權을 取得할 수 있는 物權的 期待權을 取得한다.²³⁾ 그리고 買受人은 이 期待權을 現在의 財產權으로 處分할 수 있다. 그 方法은 完全한 權利 즉 所有權의 移轉에 관한 規定에 따른다. 즉 期待權者는 期待權의 移轉에 관한 物權的 合意(Einigung)와 物權的 引渡(übergabe; 現實的 引渡 뿐만 아니라 占有改正, 返還請求權의 讓渡 簡易引渡로 可能)로서 그 期待權을 讓渡할 수 있다. 이러한 期待權에 대한 違法的 侵害는 不法行爲로서 損害賠償債權을 發生하게 한다. 한편 期待權의 讓渡에는 賣渡人의 同意를 요하지 않는다.²⁴⁾當事者間에 買受人의 目的物에 대한 讓渡·入質·讓渡擔保 등의 處分行爲를 禁止하는 特約을 한 경우에 이 禁止特約의 效力範圍에 대하여 疑問이 提起되고 있다. ㉠ 特約이 買受人은 目的物에 대한 完全한 所有權者가 아니기 때문에 그 所有權 全體를 處分할 수 없다고 하는 當然한 事實을 確認한데 지나지 않는

23) 李銀榮, 前掲書, 245~246면.; 郭潤直, 前掲債權各論, 262면.

金曾漢, 物權法講義, 博英社, 1983, 87면.; 金容漢, 物權法論, 博英社, 1989, 88면.

嚴英鎮, 前掲書, 152면.; 崔鍾吉, 前掲論文, 75면.

權五乘, 前掲論文, 43면.; 李根植, 前掲論文, 67면. 同, 前掲“割賦販賣”, 125면.

竹下守夫, 「所有權留保と破産·會社更生」, 法律時報 25권2호, 1973, 207면이하.

神田宗吉, 「所有權留保買賣における法律關係」, 上智法學論集20권2호, 1977, 200면이하.

栗田隆, 「會社更生と所有權留保」, 關西大學法學論集, 33권1호, 1983, 279면.

柚木馨·高木多喜男, 前掲書, 581면.

Larenz, Lehrbuch des Schuldrechts, Bd, II-1,

Besonderer Teil, 13 Auf1, 1986, S.115

24) 權五乘, 前掲論文, 43면.; 嚴英鎮, 前掲書, 152면.; 郭潤直, 前掲債權各論, 262면.

田中整彌, 所有權留保をめぐる占有關係-主としてドイツ法を中心として,

民商法雜誌, 第78卷 臨時增刊號(1)(末川博先生追悼論文集), 東京, 有斐閣, 251면.

것인가, 아니면 ㉔ 이 特約이 買受人의 固有의 物權的 地位, 즉 物權的 期待權의 處分까지 금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냐 하는 問題이다. 이에 前者로 解釋하여 이것은 當事者 사이에서 債權的 效力이 있을 뿐이고, 買受人은 그의 期待權을 自由로이 處分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단지 賣渡人은 買受人에게 債務不履行을 理由로 契約을 解除하고 買受人이 目的物을 返還할 수 없으면 損害賠償을 請求할 수 있을 뿐이다. 物權的 期待權 理論을 主張하는 者 모두 이 論據에 같은 趣旨이나, 이론 전개에 있어 買受人(期待權의 讓渡人)으로부터 目的物을 讓受받은 者(期待權의 讓受人)는 自動的으로 期待權의 讓渡人의 地位를 가지는 것은 아니고 그러기 위해서는 買受人(期待權의 讓渡人)과 契約引受가 있어야 하고 賣渡人의 同意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論者²⁵⁾도 있으나, 期待權의 讓受人이 期待權의 讓渡人의 地位(買受人)를 가져야만 期待權을 保有하는 것은 아니므로 별 意味가 없는 論據이고 또한 또 다른 反對의 소수 見解도 있다. 26)소수 見解는 賣買의 目的物을 現實的으로 引渡받아서 그 債權擔保를 實現하기 때문에 이러한 特約은 擔保權의 實現을 沮害하거나 크게 困難하게 하는 買受人의 處分行爲를 禁止하여야 하는 것이 合理的이다는 論據이다. 그러나 買受人의 法的 地位 保障 및 投下資本의 回收 등을 考慮할 때 多數說이 合理的이다.

③. 買受人의 所有型 즉 讓渡擔保類推說 또는 解除條件附所有權移轉說에 의할 경우 割賦販賣에 있어서 所有權留保의 實質的인 目的을 보다 더 強調하여 當事者의 法的 關係를 買受人은 그 目的物에 대한 所有權을 取得하고 賣渡人은 이 目的에 대하여 殘存代金を 被擔保債權으로 하는 擔保權을 取得하는 것으로 본다.²⁷⁾따라서 買受人은 自由로이 제3자에게 處分할 수 있다. 단, 買受人에게는 留保所有權의 負擔이 있는 所有權이 歸屬되어 있기 때문에 제3자가 取得時 擔保權이 붙은 所有權을 取得하게 되는 것이다. 이 경우 賣渡人이 處分을 禁止하는 特約이 있는 경우에는 買受人의 處分行爲는 債

25) 郭潤直, 前掲債權各論, 262면.

26) 權五乘, 前掲論文, 43면.; 安永正昭, 前掲論文, 383면.

27) 金容漢, 前掲書, 660면.; 同, 前掲論文, 29면.; 米倉明, 「所有權留保의 實證的研究」, 東京, 商事法務研究會, 1978, 295면 이하. 특히 300면 이하

務不履行이 될 것이고 賣渡人이 그것을 理由로 契約을 解除하는 경우 買受人이 目的物을 返還할 수 없게 되면 그 損害를 賠償하면 된다. 따라서 買受人의 地位 保障과 投下 資本 回收容易性 등을 勘案할 때 이 說을 主張한다.

(3).連帶保證人設定條項

連帶保證債務는 普通의 保證債務가 가지는 補充性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債權者의 權利가 顯著하게 強化되는데 그 特色이 있다.²⁸⁾이리하여 賣渡人은 자기의 代金債權을 보다 強力하게 確保하기 위하여 所有權留保 외에 連帶保證人을 세우도록 하고 있는 바 실제 約款에서는 “連帶保證人은 買受人과 連帶하여 本約定에서 정한 買受人의 義務를 誠實히 履行하여야 합니다”.²⁹⁾“買受人의 連帶保證人은 이 約定에서 정한 買受人의 債務를 買受人과 連帶하여 성실히 履行하여야 합니다”.³⁰⁾ “賣渡人이 認定하는 1인이상 連帶保證人 入保”³¹⁾ “買受人이 負擔하는 債務에 대하여 買受人과 連帶하여 責任을 진다”.³²⁾“買受人이 本契約을 履行치 않을 때는 連帶保證人이 이를 連帶責任 支拂한다”.³³⁾“買受人이 履行하지 않는 경우 連帶保證人은 賣渡人의 請求時 異議없이 辨償하여야 한다”.³⁴⁾이와 같이 明示되어 있다. 그러나 連帶保證契約 자체를 無效라고 할 수 없으나 所有權留保制度 및 保證保險制度의 導入³⁵⁾ 등으로 賣渡人의 債權確保는 充分히 되

28) 金容漢, 債權總論, 博英社, 1983, 388면. ; 嚴英鎮, 前掲書, 147면.

29) 삼성전자, 불입약정서, 제 13조; 아남전자, 대금불입약정서, 제 13조
대우전자 주식회사, 불입약정서, 제 11조

30) 주식회사 금성사, 금성팩토링매매약관, 제 11조

31) 현대자동차서비스주식회사, 매매계약서, 제 15조 2항 1호
쌍용자동차 주식회사, 자동차(중기)매매계약서, 제 15조 2항 1호
대우자동차 주식회사, 매매계약서, 제 15조 2항 1호
주식회사 기산, 자동차(중기)매매계약서, 제 15조 2항 1호

32) 주식회사 서광, 할부판매약정서, 제 6조

대우전자, 불입대금약정서 약정조항, 제 11조

아남전자, 불입대금약정서 약정조항, 제 13조

33) 부산영창피아노사, 계약서, 제 11조.

34) 태광에로이카부산직매장, 월부불입계약서, 제7조

35) 대우·현대·쌍용·기산 자동차(주), 매매계약서, 제 15조 2항 3호

므로 消費者에게는 保證人을 세워야 購入할 수 있는 것은 오히려 消費者에게 負擔을 주게 되고, 販賣促進만 沮害하는 結果를 招來할 뿐이므로 이러한 約款條項은 賣買價格의 一定水準 以上에서만 認定하는 것이 좋다고 思料된다.

(4) 交換 返品の 禁止條項

賣渡人은 瑕疵없는 物件을 買受人에게 移轉하여야 하고, 買受人의 使用收益에 不便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만약 瑕疵있는 物件을 給付하거나 使用中 買受人의 故意·過失이 아닌 自然的으로 故障이 發生한 경우에는 買受人에게 交換·修繕請求權이 認定되어야 하므로, 따라서 交換이나 修繕이 어렵고 그 缺陷이 重大하여 商品의 目的을 達成할 수 없는 경우(割賦去來法 제 12조 1항 4호)와 買受人의 이 請求權이 相當期間 동안 履行되지 않을 때에는 買受人은 割賦金의 支給을 拒絶할 수 있고(同法 제 12조 1항 3호),³⁶⁾더 나아가 契約을 解除하고 損害賠償을 請求할 수 있다(民法 제 550조 1항 및 575조 1항 根據). 그리하여 이 條項은 割賦去來法 施行 以後로 約款規定으로는 거의 찾기 힘들게 되었다.

2). 買受人의 債務不履行을 對備하기 위한 約款

(1) 契約解除條項

買受人의 債務不履行이 契約解除權 發生原因인 것은 勿論이나, 그 債務不履行의 事由는 多樣하게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① 買受人이 約定拂入金을 2회(거치식 割賦인 경우는 2개월)이상 延滯하여 21일이상의 期間을 정하여 書面으로 催告하였으나 買受人이 이에 不應하는 경우,³⁷⁾ 또는 買受人이 불입금 支給義務를 履行하지 아니하여 14일

36) 삼성전자, 대금불입약정서 약정조항, 제 11조 2항.

아남전자, 대금불입약정조항, 제 8조 2항.

금성사, 금성 팩토링 매매약관, 제 2조 2항.

37) 삼성전자주식회사, 물품대금 불입약정서, 제 8조 1항 1호

이상의 期間을 정하여 書面으로 그 履行을 催告한 경우³⁸⁾ ② 買受人이 期限利益喪失의 事由가 있어 一定期間을 정해 殘餘代金 一時拂 拂入을 書面으로 催告하였으나 買受人이 이에 不應하는 경우,³⁹⁾ 위 約款의 具體的 內容은 ③ 代金の 完給前에 賣渡人의 承諾 없이 他人에게 讓渡·貸與·擔保提供등의 任意處分을 한 경우, ④ 連帶保證人에 관한 記載事項이 虛僞로 記載되었을 경우, ⑤ 住所를 임의로 變更하거나 物品을 다른 곳으로 移轉할 때에 賣渡人에게 不通報 한 경우, ⑥ 買受人이 拂入金을 3回(3個月)以上 延滯한 경우, ⑦ 買受人의 어음 또는 수표의 不渡, 去來停止되거나 買受人에게 押留 假押留 假處分 破産 회사정리 또는 特別清算節次 開始, 滯納處分등이 發生했거나 發生할 것이 確實한 경우, ⑧ 기타 賣渡人의 權利(所有權)를 侵害한 경우⁴⁰⁾ 및 ⑨ 買受人이 移民 婚姻 등으로 國外 移住하는 경우 등이다. 割賦去來法 實施 以前에는 契約上의 어느 한 條項이라도 違背하였다고 賣渡人이 認定할 경우에는 買受人에 대한 事前催告 없이 解除할 수 있다는 條項, 一回의 履行遲滯가 解除의 原因이 되고 이것이 無猶豫解除나 當然解除(失權)條項을 隋伴하고 있었으나 지금은 찾기 힘들다. 그 理由는 割賦去來法 제 8조에 違反되기 때문이다.

勿論 買受人이 代金の 支給을 게을리 한 때에는 賣渡人은 割賦去來法(제 8조 1항)이 정한 節次에 따라 즉 14日以上の 期間을 정하여 買受人에게 그 履行을 書面으로 催告하여 契約을 解除할 수 있다. 또한 買受人이 支給不能 된 경우에도(買受人이 押留, 假押留, 假處分の 通告 및 破産 特別清算開始, 諸稅公課金の 滯納處分 등) 賣渡人은 契約을 解除할 수 있으나, 그 節次는 일단, 買受人에게 期限利益이 喪失되어 賣渡人이

주식회사 금성사, 금성팩토링 매매약관, 제10조 1항 1호

38) 대우전자 주식회사, 대금불입약정서, 제 8조 1항 1호

아남전자, 대금불입약정서, 제 10조 1항

39) 삼성전자 주식회사, 물품대금 불입약정서, 제 8조 1항 2호

주식회사 금성사, 금성팩토링매매약관, 제 10조 1항 2호

대우전자 주식회사, 대금불입약정서, 제 8조1항 2호

아남전자, 대금불입약정서, 제 10조 1항

40) 具體的 約款內容 예 3~8까지는: 삼성전자, 물품대금불입약정서, 제 7조; 금성팩토링 매매약관, 제 9조 및 아남전자, 대금불입약정서, 제 9조의 내용이다.

買受人에게 一時拂納入을 請求하고 그래도 支給遲滯가 있는 경우 割賦去來法 제 8조가 정한 節次에 의하여 解除할 수 있다. 따라서 14日以上の 期間을 정하여 買受人에게 그 履行을 書面으로 催告하여야 하며 催告의 效力 發生時期는 勿論 買受人에게 到達할 때 부터이다(民法 제 111조 參照). 契約이 解除된 경우에는 각 當事者는 그 相對方에 대하여 原狀回復의 義務를 지고, 이 義務는 同時履行의 關係에 있다(割賦去來法 제 8조 2항). 그리고 賣渡人에게는 目的物返還請求權 및 損害賠償請求權이 發生하지만 賣渡人의 損害賠償 請求金額에는 割賦去來法 제 9조에 정한 範圍內에서 決定되어야 한다.

이에 買受人은 目的物을 返還하여야 한다. 原物返還이 原則이나 原物이 滅失·毀損에 의하여 原物을 返還할 수 없는 경우에는 割賦價格에 相當한 金額(同法 제 9조 2항 2호), 原物을 返還한 경우에도 使用料와 契約締結 및 그 履行을 위하여 通常 必要한 費用額을 返還하여야 한다. 使用料 즉 損料는 消費者保護院이 정한 표준손료표에 의한다 (표준손료표 참조). 買受人은 그 目的物에서 受取한 果實도 返還하여야 한다. 그리고 遲延損害金도 支拂하여야 한다. 遲延損害金은 遲延된 割賦金에 大統領令이 정한 率(年 2할5분의 範圍內에서-同法 施行令 제 5조)을 곱하여 算定한 金額에 相當하는 金額을 超過하지 못한다(割賦去來法 제 9조 1항).

賣渡人은 이미 受領한 代金 및 受領 후의 利子(利子制限法 제 1조 1항의 規定에 의한 最高利子率로 하여야 한다. 그 理由는 割賦手數料의 實際年間料率의 最高限度이기 때문이다)를 返還하여야 하고, 買受人이 그 目的物에 대하여 必要費를 支出한 경우에는 그 金額, 有益費를 支出한 경우에는 賣渡人의 選擇에 의하여 그 金額 또는 現存의 增加額을 買受人에게 返還하여야 한다. 그리고 본 條項은 契約書 作成時 約款의 內容은 9호이상의 할자를 使用하여야 하고 붉은색으로 記載하고 테두리를 쳐야 한다(同法 施行規則 제 3조 1항 1~2호)

(2).期限利益喪失條項

이에 관한 約款條項은 前述한 보기 ③에서 ⑧까지의 例文 事項들과⁴¹⁾ 割賦去來法 제 10조에서 明示하고 있는 “買受人이 다음 支給日까지 連續하여 2회이상 支給하지 아니하고 그 支給하지 아니한 金額이 割賦價格의 1/10을 超過하는 경우 및 生業에 從事하기 위하여 또는 外國人과 婚姻 및 緣故關係로 인하여 外國에 移住하는 경우에는” 買受人은 期限利益을 喪失하여 殘餘代金 全額에 대하여 一時拂로 完拂하는 경우에도 期限 未到來 拂入代金에 대하여 割賦手數料 相當額(別도 計算方法에 依함)을 控除받을 수 있다.⁴²⁾ 一回의 履行遲滯로 期限利益을 喪失한다는 條項은 어떤 約款에서도 찾을 수 없고, 설혹 있다 하더라도 그 條項은 同法 제 10조 1항에 違背되므로 無效이다. 그리고 買受人이 期限利益을 喪失하여 殘餘代金 全額에 대하여 一時拂로 完拂하는 경우 期限 未到來 拂入代金에 대하여 割賦手數料 相當額을 控除하는 것은⁴³⁾ 同法 제 11조 2항의 趣旨을 살린 매우 妥當한 條項이지만, 同法 제 10조에 규정된 바 買受人이 期限利益을 主張할 수 없는 경우는 割賦金을 다음 支給日까지 連續하여 2回以上 支給하지 아니하고, 그 支給하지 아니한 金額이 割賦價格의 1/10을 超過하는 경우로 하고 있다. 따라서 買受人이 連續하여 2回以上 割賦金의 支給을 遲滯하여도 그 遲滯된 割賦金이 賣買代金の 1/10이 되지 않은 경우 및 遲滯된 割賦金이 賣買代金の 1/10이 넘어도 連續하여 2回以上 割賦金의 支給을 遲滯하지 않은 경우에는 賣渡人은 期限利益을 喪失시킬 수 없다.⁴⁴⁾ 그러나 約款規定에는 期限利益의 喪失要件으로 回數의 制限만 明示하고

41) 아남전자, 불입대금약정서 약정조항, 제 9조
주식회사 금성사, 금성팩토링 매매약관, 제 9조

삼성전자, 물품대금약정서 약정조항, 제 7조
42) 삼성전자주식회사, 물품대금불입약정서, 제 7조 2항.
주식회사 금성사, 금성팩토링 매매약관, 제 9조 2항 및 제 7조
아남전자, 대금불입약정서, 제 5조
대우전자 주식회사, 대금불입약정서, 제 5조

43) 삼성전자주식회사, 대금불입약정서, 제 7조 2항
주식회사 금성사, 금성팩토링 매매약관, 제 9조 2항

44) 대우전자 주식회사, 대금불입약정서, 제 7조 1항

金額에 관한 要件은 明示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⁴⁵⁾ 消費者保護의 측면에서도 그러한 約款規定은 그 效力을 否定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回數를 1회 延長한 경우 支給回數가 짧은 경우 買受人에게 不利益을 주지 않지만 支給回數가 많은 경우 3회 遲滯時에도 割賦金의 1/10이 되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同法 제13조에도 效力을 否定하고 있다.

그리고 本條項은 契約書 作成時 約款의 內容은 9호以上の 活字를 使用하여야 하고 붉은색으로 記載하고 테두리를 쳐야 한다(同法 施行規則 제 3조 1항 1~2호)

(3). 損害賠償條項

割賦去來法 施行以前의 約款內容은 買受人의 債務不履行에 의한 契約解除의 경우, 損害賠償에 대하여는 違約金·損害金·使用料·損料 등의 名目으로 損害額을 豫定하여, 예컨대 ① 既拂入金을 無效로 한다 ② 既拂入金은 使用料·損料로 控除한다. ③ 契約金은 賣渡人에게 歸屬되고 買受人은 賣渡人에게 契約金과는 별도로 契約日로부터 1개월 내에는 代金總額의 2할, 1개월 후에는 3할을 使用料 및 損害賠償金條로 따로 支給하여야 한다 ④ 既拂入金은 일체 返還하지 않으며, 正價의 3할을 賠償하여야 한다. 이상의 內容은 契約을 解除하여 買受人의 責任을 묻는 경우이나, 契約을 解除하지 않고 끝까지 買受人의 履行遲滯를 追급할 경우의 遲延賠償額을 豫定한 條項도 있었다. 그러나 지금의 約款內容에서는 위의 內容은 찾아 보기 힘들고, 있다 하더라도 그 內容에 效力을 附與치 않는다. 왜냐하면 割賦去來法 제 9조는 民法 제 398조에 대한 特別規定으로, 同條 제 1항에서는 賣渡人 또는 信用提供者가 割賦金 支給義務의 不履行을 理由로 買受人에게 請求하는 損害賠償額은 遲延된 割賦金에 大統領令으로 정한 率을 곱하여 算定한 金額에 相當하는 遲延損害金의 合計額을 超過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또한 2항

45) 삼성전자 주식회사(불입약정서 제 7조 1항 1호) 및 아남전자(대금불입 약정서제 9조 1항 2호)에서는 불입금을 3개월이상 연체한 경우로 명시하고 할부금의 1/10을 초과하는 요건은 명시되어 있지 않음

에서는 買受人이 割賦金 支給義務를 履行하지 아니하여 契約解除을 당할 경우 賣渡人이 買受人에게 請求하는 損害賠償額은 각 경우 所定の 金額과 1항의 遲延賠償金의 合計額을 超過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또한 3항에서는 損害賠償 請求金額의 제한 根據로서 「賣渡人 또는 當事者는 損害賠償額의 豫定·違約金 其他 어떠한 名稱·形式如何를 不拘하고 제 1항 또는 제 2항에 規定된 金額을 超過하여 損害賠償을 請求할 수 없다」고 規定하고, 違約金에 관하여도 同條 4항에서는 「賣渡人 또는 信用提供者는 損害賠償을 請求함에 있어 입은 損害를 最小化하도록 信義에 좇아 誠實히 하여야 한다」고 規定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損害賠償에 관하여서는 詳細하게 規定하여 消費者를 保護하고 있고, 지금에 있어서 大部分의 約款內容은 여기에 따르고 있다.⁴⁶⁾

3). 賣渡人의 權利의 強制實現을 容易하게 하기 위한 約款

(1). 住所變更告知條項

民法 제 18조에서는 “生活의 根據가 되는 것을 住所라 하고, 住所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고 規定하고 있다. 이것은 오늘날 生活關係의 多樣性和 複雜化에 비추어 住所의 複數主義를 취하고 있으며, 居住·移轉의 自由는 憲法에서 保障된 基本權이다. 따라서 住所移轉에 대한 制限은 法律로서만 할 수 있다(憲法 제 35조 2항)⁴⁷⁾ 그러나 契約自由의 原則에 의하여 制限할 수 있으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買受人이 住所를 移轉한 경우 賣渡人에게 告知하는 義務를 지우는 것으로 解釋하여야 하고, 다만 義務違反時 解除의 事由가 될 수 있다고 解釋하여야 한다. 이에 約款의 內容도 「買受人이 約定代金を 完拂하기 전에 住所를 變更하거나 約定物品을 다른 場所에 移轉할 때

46) 삼성전자 주식회사, 물품대금 불입약정서, 제 9조, 제 6조
주식회사 금성사, 금성팩토링매매약관, 제 10조 2항, 제 8조
대우전자, 대금불입약정서 약정조항, 제 8조 2항
아남전자, 대금불입약정서 약정조항, 제 10조 2항

47) 民法上的 制限으로는 未成年者에 대한 親權者의 居所指定權(제 914조)
및 夫婦同居義務(제 826조 1~2항) 등이 있다.

에는 다음 納入日까지 賣渡人에게 通報하여야 한다. 또는 買受人이 앞의 內容의 義務를 怠慢히 하여 賣渡人으로부터 通知 혹은 送付書類 등의 未到着으로 인해 不利益을 받는 것에 異議를 提起할 수 없다.⁴⁸⁾ 또는 「買受人 또는 連帶保證人の 住所變更時는 7 일 이내에 賣渡人에게 書面으로 通報하여야 하며 通知義務 懈怠의 不利益은 買受人의 責任으로 한다」.⁴⁹⁾ 「住所變更時에는 곧 事業者에게 通報하여야 합니다」.⁵⁰⁾ 등의 內容으로 되어 있고, 同法 施行以前의 경우 住所移轉을 事전에 告知하지 않으면 詐欺로 認定한다는 約款條項 같은 것은 이제 찾아 볼 수 없고, 不告知로 인하여 發生한 不利益의 問題를 買受人에게 歸屬시키는 정도이다.

(2). 裁判管轄條項 및 不提訴條項

約款의 內容을 보면 「本 約定에 관한 法的分爭은 民事訴訟法上的 普通裁判籍에 의한 法院을 管轄法院으로 한다」.⁵¹⁾ 「다만 裁判籍이 각기 다른 경우에는 相互 關聯裁判籍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⁵²⁾ 「이 契約에 관련된 訴訟의 管轄法院은 提訴當時 買受人의 住所를 住所가 없는 경우에는 居所를 管轄하는 地方法院으로 한다. 단 提訴當時 買受人의 住所 또는 居所가 分明치 아니한 경우에는 서울 民事地方法院 또는 賣渡人の 營業所 所在地를 管轄하는 法院을 管轄法院으로 한다」.⁵³⁾ 「提訴當時 買受人의 住所 또는 居所가 分明치 아니한 경우에는 賣渡人の 本店 또는 營業所 所在地를 管轄하는 法

48) 삼성전자주식회사, 물품대금불입약정서, 제 3조 1, 2항

주식회사 금성사, 금성팩토링 매매약관, 제 6조 2항

대우전자 주식회사, 대금불입약정서, 제 3조

49) 현대자동차서비스 주식회사, 매매계약서, 제 8조

대우자동차 주식회사, 매매계약서, 제 8조

쌍용자동차주식회사, 자동차(중기)매매계약서, 제 8조

주식회사 기산, 자동차(중기)매매계약서, 제 8조

50) B. B. C 영어연구원, 할부계약서, 제 8조

51) 삼성전자 주식회사, 물품대금 불입약정서, 제 15조

아남전자, 대금불입약정서, 제 14조

52) 주식회사 금성사, 금성 팩토링 매매약관, 제 13조

53) 대우자동차 주식회사, 매매계약서, 제 11조

아남전자, 대금불입약정서 약정조항, 제 14조

院을 管轄法院으로 한다.」⁵⁴⁾ 이와 같이 각기 달리 表現하고 있으나 割賦去來法 제 16 조에서는 「割賦契約에 관한 訴訟은 提訴當時 買受人의 住所를 住所가 없는 경우에는 居所를 管轄하는 地方法院의 專屬管轄로 한다. 다만 提訴當時 買受人의 住所 또는 居所가 分明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規定하여 買受人에게 不利한 管轄 合意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違反되는 條項은 無效이고, 또한 不提訴 條項도 無效이기 때문에 割賦去來法 施行以後의 大部分의 約款內容은 同法 제 16조의 規定內容과 같은 內容을 規定하고 있고, 不提訴條項은 찾아 볼 수 없다.

(3).自力回收條項· 다른 物品回收條項

「賣渡人이 契約을 解除하고 物品을 回收할 경우 買受人은 物品引受後 返還時까지의 期間동안(15일 미만은 절사하고 15日以上은 1개월로 計算합니다. 단 최소 1개월은 반드시 適用됩니다.) 物品使用에 따르는 通常損料額(割賦販賣價格에 標準損率을 곱한 金額)을 支拂하여야 하며, 通常損料額과 既拂入한 金額을 比較하여 相互 精算합니다」⁵⁵⁾ 「賣渡人이 契約을 解除하고 物品을 回收할 경우 買受人은 物品引受後 返還時期까지의 使用에 대하여 별표 標準損率票에 의해 計算한 通常의 損料를 支拂하여야 하며, 이 損料額과 買受人이 拂入한 金額(契約金 包含)을 比較하여 相互 精算한다」⁵⁶⁾ 「賣渡人이 物品을 返還要求하는 경우에는 消費者保護院이 정한 標準損料表에 의한 通常損料와 契約 締結 및 그 履行을 위하여 通常 必要한 費用額의 合計額을 支拂하여야 합니다. 이때 遲延損害金도 別途로 支拂하여야 합니다」.⁵⁷⁾ 이와 같이 解除하여 精算은 가능하지만 自力回收, 다른 物品回收條項은 當然히 效力이 否定되며, 同法 施行以後로 이같은 條

54)쌍용자동차 주식회사, 매매계약서, 제 11조
현대자동차서비스 주식회사, 매매계약서, 제 11조
주식회사 기산, 매매계약서, 제 11조

55)삼성전자 주식회사, 물품대금약정서, 제 9조

56)한국신용유통주식회사, 대금불입약정서, 제 10조 2항
주식회사 금성사, 금성 팩토링 매매약관, 제 10조 2항

57) 대우전자 주식회사, 대금불입약정서, 제 8조 2항

項은 찾아 보기 힘들다.

4). 瑕疵擔保責任約款

(1). 約款의 內容

「賣渡人이 買受人에게 供給한 物品에 대한 品質保證 및 修理는 賣渡人이 정한 品質保證制度에 의하는 것을 原則으로 하되, 그 內容이 民法등 一般法規定이나 消費者被害補償規定에서 정한 內容보다 買受人에게 不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⁵⁸⁾ 買受人의 正當한 要求가 賣渡人의 歸責事由로 履行되지 않을 때에는 買受人은 賣渡人의 履行時까지 約定拂入金 納付를 延期 또는 拒否할 수 있다.⁵⁹⁾ 「買受人이 引受한 자동차에 대한 保證修理는 契約의 賣渡人이 交付하는 保證書에 따라 保證修理義務를 지며 이는 買受人이 갖는 民法上的 權利를 制限하지 않는다.⁶⁰⁾ 따라서 買受人은 賣渡人이 瑕疵擔保責任을 履行하지 아니하는 경우 拂入金を 拒絶할 수 있고(同法 제 12조 1항 3호), 경우에 따라서는 契約을 解除하고 損害賠償을 請求할 수 있다(民法 제 580조 1항, 제 575조 1항).

(2). 瑕疵擔保責任의 內容

賣買의 目的物에 瑕疵가 있는 때에는 買受人은 一定한 要件下에 契約을 解除하고 損害賠償을 請求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欠이 없는 完全한 給付를 請求할 수도 있

58) 대우전자 주식회사, 대금불입약정서, 제 4조

아남전자, 대금불입약정서, 제 8조 1항

59) 한국신용유통 주식회사, 대금불입약정서, 제 4조

삼성전자 주식회사, 물품대금불입약정서, 제 11조

주식회사 금성사, 금성 팩토링 매매약관, 제 2조

아남전자, 매매약정서, 제 8조 2항

60) 현대자동차서비스 주식회사, 매매계약서, 제 4조

쌍용자동차 주식회사, 자동차 매매계약서, 제 4조

대우자동차 주식회사, 자동차매매계약서, 제 4조

주식회사 기아산업, 자동차(중기)매매계약서, 제 4조

다. 이 物件의 瑕疵에 대한 賣渡人의 擔保責任을 一般的으로 賣渡人의 瑕疵擔保責任이라고 한다. 우리 民法에서는 賣渡人의 瑕疵擔保責任에 관하여 契約解除權(제 580조 1항)과 損害賠償請求權(제 575조 1항) 및 代物請求權(제 581조 2항)을 認定하고 있다. 이러한 買受人의 權利는 割賦販賣에 있어서도 適用되어야 함은 當然한 것이다. 그러나 民法에서는 都給人의 補修請求權은 認定하나(제 667조 2항) 一般賣買에 있어서는 補修請求權을 認定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修繕請求權은 品質保證과 關係되며 品質保證書는 賣渡人의 瑕疵擔保責任의 內容에 관한 特約이라고 할 것이다.

(3).品質保證書의 法的 性質

割賦契約의 契約書 約定條項에는 “賣渡人이 買受人에게 供給한 物品에 대한 品質保證 및 修理는 賣渡人이 정한 品質保證制度에 의하는 것을 原則으로 하되, 그 內容이 民法등 一般規定이나 消費者被害補償規定에서 정한 內容보다 買受人에게 不利한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⁶¹⁾ 또는 “買受人의 正當한 要求가 賣渡人의 歸責事由로 履行되지 않을 때에는 買受人은 履行時까지 約定拂入金 納付를 延期 또는 拒否할 수 있습니다.”⁶²⁾ 또한 “賣渡人이 買受人에게 자동차를 引渡할 때 交付하는 별도의 保證書에 의하여 자동차에 대한 品質을 保證한다”⁶³⁾ 등으로 明示되어 있으며 一般的으로 現今에서는 商品賣買에 있어서는 品質保證書を 買受人에게 交付하고 있다. 이 品質保證書의 法的 性質에 관하여는 賣渡人의 完全履行義務를 保證하는 履行擔保契約으로 보는 見解와 瑕疵擔保責任으로서의 損害擔保契約으로 보는 見解가 있다.⁶⁴⁾ 債務는 誠實히 履行하여야

61) 삼성전자 주식회사, 대금불입약정서 약정조항, 제 11조 1항.

대우전자주식회사, 대금불입약정서 약정조항, 제 4조.

아남전자, 대금불입약정서 약정조항, 제 11조 1항.

금성사, 금성 팩토링 매매약관, 제 2조 1항.

62) 삼성전자 주식회사, 대금불입약정서 약정조항, 제 11조 2항.

아남전자, 대금불입약정서 약정조항, 제 8조 2항.

금성사, 금성 팩토링 매매약관, 제 2조 2항.

63) 대우, 쌍용, 기산, 현대등 자동차주식회사, 자동차 매매계약서, 제 4조

64) 坂上則雄, 「品質保證書の法的性質」, シュリスト, No. 494, 1971, 14면.

할 義務가 源泉的으로 內在하고 있으므로 前說이 妥當하다. 品質保證書를 交付받은 경우나 또는 約款條項에 明示되어 있는 경우에는 兩 當事者間의 直接的인 契約關係가 存在함에는 異論이 없을 것이다. 따라서 品質保證書의 發行은 品質保證書의 範圍內에서 製造者로부터 最終消費者에 대하여 直接 引受한 特別한 契約責任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4). 商品의 見本과 現物이 相異할 경우 및 商品의 缺陷이 있는 경우

割賦販賣에 있어서 賣渡人은 契約金を 受領하고, 目的物을 買受人에게 引渡하는 것이 一般의 常例이다. 이 경우 引渡된 商品이 約定한 것 또는 見本과 相異할 때(즉 型, 品質, 性能등이), 또한 引渡當時는 完全品이었다고 하더라도 買受人이 使用中 缺陷을 發見하거나, 買受人의 故意·過失이 아닌 自然的으로 故障이 發生한 경우에도 賣渡人의 契約違反으로 交換請求權이나 修繕請求權이 買受人에게 認定되어야 한다. 그리고 交換이나 修繕이 어렵고 그 缺陷이 重大하여 商品의 目的을 達成할 수 없을 경우⁶⁵⁾ 및 買受人의 이 請求權이 相當期間 동안에 履行되지 않을 때에는 買受人은 割賦金の 支給을 拒絶할 수 있고(割賦去來法 제12조 1항 3호),⁶⁶⁾ 더 나아가서 契約을 解除하고 損害賠償을 請求할 수 있다(民法 제 550조 1항 및 575조 1항에 根據). 단 契約解除 및 損害賠償請求는 買受人이 目的物의 瑕疵를 發見한 때로부터 6月內에 하여야 한다(民法 제 582조). 이 期間은 除斥期間이다.

65) 郭潤直, 前掲債權各論, 223면. 및 嚴英鎮, 前掲書, 180면. 그리고 民法 제 580조 參照: 즉 商品의 目的을 達成할 수 없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商品의 瑕疵를 쉽게 또는 저렴하게 修繕할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한다. 쉽게 또는 비싼비용을 들이지 않고서 修繕할 수 있는 경우에는 契約을 解除할 수 없고 그 修繕에 필요한 費用을 損害賠償의 一部로서 請求할 수 있을 뿐이다.

66) 삼성전자 주식회사, 물품대금 불입약정서, 제 11조 2항.
금성사, 금성팩토링 매매약관, 제 2조 2항
아남전자, 대금불입약정서 약정조항, 제 8조 2항.

5).信用情報の利用·交換 및 登録

「買受人 또는 連帶保證人は 賣渡人が 客觀的인 事實 또는 本約定에 基礎한 本人의 信用情報を 賣渡人 또는 關聯業界에 登録하고 正當하게 相互 利用하는 것을 承諾한 것으로 본다」 또한 「賣渡人は 買受人 또는 連帶保證人の 不利益한 信用情報の 登録에 있어서 買受人 또는 連帶保證人에게 그 内容を 通報한 후 別途의 異議가 없거나 相當한 期間이 지나도록 連絡이 없을 때에는 關聯業界에 登録할 수 있다」. 「買受人 또는 連帶保證人は 正當한 理由가 있는 경우, 關聯資料의 閱覽 및 是正을 要請할 수 있다」. 本條項과⁶⁷⁾ 買受人 또는 連帶保證人이 이 契約을 違反하여 債務를 不履行한 경우(不渡 및 3個月 또는 4回以上 延滯)에 賣渡人は 事前 通知後 이 事實을 信用情報機關과 關聯業界에 提供할 수 있으며, 信用을 確認하기 위하여 信用關聯機關으로부터 情報を 提供 받을 수 있다.⁶⁸⁾이같은 條項은 過去에는 없던 內容으로 現今의 信用情報化 時代に 充分히 考慮될 수 있는 內容이지만, 過剩與信을 防止하기 위하여는 信用情報の 貯蓄과 整備가 不可缺한데, 이에 隨伴하여 消費者의 privacy가 侵害되거나 不正確한 信用情報が 登録됨에 따라 消費者의 利益을 害치는 등의 問題가 發生할 수 있다. 이러한 事態에 適切히 對處하기 위하여⁶⁹⁾ 割賦販賣者 등 信用情報機關은 信用정보를 買受人의 支給能力의 調査 以外の 目的을 위하여 使用하는 것을 禁止하고 또 信用情報機關은 正確한 信用정보를 割賦業者 등에 提供하는 努力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個人의 privacy를 侵害하지 않은 範圍內에서 嚴格히 規制되어 使用되어야 할 것이다.

67) 삼성전자 주식회사, 들뜸대금 불입약정서, 제 14조
주식회사 금성사, 금성팩토링 매매약관, 제 12조
대우전자 주식회사, 대금불입약정서, 제 12조
아남전자, 대금불입약정서, 제15조

68) 대우자동차 주식회사, 자동차매매계약서, 제 10조
주식회사 기아산업, 자동차매매계약서, 제 10조
현대자동차서비스주식회사, 자동차매매계약서, 제 10조
쌍용자동차 주식회사, 자동차매매계약서, 제 10조

69) 稻葉健次, 「割賦販賣法の改定の概要と運用上の問題點」,
シユリスト, 1984. 7(No. 818), 22면

6). 中途一時拂 納入條項

割賦販賣價格이 現金價格보다 高價인 줄 알면서도 一時拂로 購入하기 困難하여 割賦로 購入하는 것이 一般的 事例이므로 割賦金 殘額을 一時에 支給하면 나머지 期間에 대한 割賦手數料를 控除해 주는 것이 合理的이다. 따라서 割賦去來法에서도 이 規定을 두고 있으며(제 11조) 또한 割賦手數料의 實際年間料率을 周知事項 및 必要的 記載事項으로 規定하고 있다(割賦去來法 제3조 및 4조). 이렇게 하여 消費者가 一目瞭然하게 自己가 購入하고자 하는 物件의 去來條件을 가늠할 수 있게하기 위함이다.

買受人이 約定 拂入期間 中途에 殘餘物品代金 全額을 一時拂로 完拂하는 경우에 期限未到來 代金에서 그 期間에 相當하는 割賦手數料중 一部를 控除받을 수 있다.⁷⁰⁾ 一般적으로 買受人은 割賦로 目的物을 購入할 當時에는 現金으로 購入하는 경우보다 不利한 것을 알면서 購入하였지만, 當時에는 購入할 現金이 없어 割賦로 購入하였으나 後에 現金이 마련되어 割賦金을 期間前에 支給하여 割賦金 契約의 拘束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한다면, 期間前에 支給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妥當하며 따라서 割賦代金이 賣買代金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期限의 利益은 買受人에게 있다고 할 것이며, 그러므로 買受人은 비록 期間前이라도 現金價格으로 支給할 때까지의 手數料를 더한 金額을 支給하면 賣渡人의 利益을 害하지 아니하므로 이같은 趣旨에서 同 條項이 規定된 것이다. 그러나 實際調査結果 本條項을 消費者들은 잘 알지 못하고 있으므로 弘報에 力點을 두어야 한다.

7). 撤回權條項

(1). 撤回權의 意義

70) 삼성전자 주식회사, 물품대금 불입약정서, 제 10조
주식회사 금성사, 금성 팩토링 매매약관, 제 7조
대우전자 주식회사, 대금불입약정서, 제 5조
아남전자, 대금불입약정서, 제 5조

撤回權留保制度라 함은 商品購入의 意思表示를 함에 따라 일단 契約이 締結된 後에도 消費者에게 眞正한 購入의 必要가 있는가를 再考할 期間을 주고 一定期間內에 그 意思를 撤回한 경우에는 契約이 없었던 것으로 하는 制度이다. 消費者에게 一定期間의 再考期間을 준다는 것이다. 그리고 撤回後에도 消費者에게 아무런 不利益을 주지 않고 마치 契約이 처음부터 締結되지 않았던 것과 같은 狀態로 하여 준다는 점에 特色이 있다.⁷¹⁾ 이 制度는 現代契約法의 消費者保護制度 중의 하나로서 割賦賣買, 訪問販賣 등의 信用去來를 中心으로 發達한 것이다. 그 理由는 信用販賣의 경우에는 ①. 現金없이 商品을 購入할 수 있다는 것이 消費者에게 魅力을 갖게 하여 衝動購買를 할 憂慮가 있다는 점, ②. 專門인 세일즈 敎育을 받은 세일즈맨의 積極的인 販賣攻勢 앞에 消費者는 약하다는 점 등 現行商品去來에서 積極的으로 消費者를 保護하는 制度를 마련하여 自衛手段을 주지 않는다면, 販賣者側과 消費者는 均衡을 잃은 關係가 되기 때문이다.⁷²⁾ 또한 이 制度가 賣買契約의 解除와 다른 점은 契約解除時에는 買受人의 事情으로 解約하는 경우 解約者는 契約金으로 支拂한 金額을 拋棄하여야만 되는데(民法 제 565조 1항), 이에 反하여 留保된 撤回權의 경우에는 消費者(買受人)가 한푼의 損害도 必이 없이 契約關係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 制度는 오늘날 각국이 다 認定하고 있으며 우리 나라의 割賦去來法에서도 詳細히 規定되어 있다(割賦去來法 제 5조, 6조, 7조).

(2).撤回權의 留保期間

留保期間에 대하여는 各國이 一定하지 아니하나, 우리 나라를 비롯하여 독일 일본

71) 李銀榮, 前掲書, 247면.; 嚴英鎮, 前掲書, 209면.

竹內昭夫, 「訪問販賣と消費者保護」, シュリストNo. 808(1984.3), 11면.

同, 「アメリカ」比較法研究, No. 36, 1974 10, 20면.

72) 李銀榮, 前掲書, 247면.; 嚴英鎮, 前掲書, 209면.

田島裕, 「訪問販賣法-イギリス・アメリカ」,

シュリスト, No. 808 (1984.3), 23면.

프랑스 벨기에 등은 契約書 交付日 또는 目的物의 引渡日로부터 7일이고(우리 나라 割賦去來法 제 6조 1항) 영국 스위스 오질이 등은 5일 이다. 우리의 경우 目的物의 性質 또는 契約締結의 形態에 비추어 撤回을 認定하는 것이 適當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例外로 하고 있다(同法 施行令 제 4조). 특이한 것은 프랑스의 경우이며 그 內容은 注文 購入約束時 休日을 포함 7日以內로 하여 더욱 熟慮케 하고 있다.

(3).撤回權의 行使.

우리 나라 割賦去來法 제 5조에 의하면 買受人은 契約書를 交付받은 날 또는 契約書를 交付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目的物을 引渡받은 날로부터 7日 以內에 割賦契約에 관한 撤回을 할 수 있다고 規定하고 있다. 또한 撤回의 意思表示는 1항에 規定한 期間內에 賣渡人에게 撤回의 意思表示가 記載된 書面을 發送하여야 하고,⁷³⁾請約의 撤回은 書面을 發送한 날로부터 效力이 發生한다(同條 제 3항). 買受人을 保護하기 위하여 發信主義를 採擇하였고, 各國이 모두 發信主義이다.⁷⁴⁾그리고 同法 施行令 제 4조에 買受人이 撤回權을 行使할 수 없는 경우를 例示하였고, 그 具體的 內容은 ①. 使用에 의하여 그 價値가 顯著히 減少될 憂慮가 있는 경우⁷⁵⁾ 와 ②. 設置에 專門人力 附屬資材 등이 要求되는 것과 割賦價格이 10만원 以下인 割賦契約⁷⁶⁾다만 신용카드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를 利用하는 경우에는 割賦價格이 20만원以下인 割賦契約으로 限定하고 있으며, ③.

73)프랑스의 경우는 切取할 수 있는 撤回用紙를 使用하고(訪問販賣法 제 2조)오질이는 交付받은 割賦證書의 寫本을 賣渡人에게 返還하면 되고(할부판매법 4조 2항), 미국은 賣渡人이 撤回權을 告知하기 위하여 買受人에게 交付한 書面을 利用하게 하고 있다. 그 書面의 下段에는 撤回權 行使의 目的을 위하여 “아래에 日字를 記入하고 署名하여 이 通知書를 使用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것으로서 去來를 解約합니다”라고 印刷되어 있다.

74)本論文 “割賦販賣의 比較法的 考察”편 參照

75)대우전자 주식회사, 대금불입약정서, 제 9조 1항 1호,

76)대우전자 주식회사, 대금불약정서, 제 9조 1항 2~3호.

대우, 현대, 기산자동차회사; 자동차매매계약서, 제 23조 후단

쌍용자동차주식회사, 자동차매매계약서, 제 25조 후단

買受人의 責任있는 事由로 目的物이 滅失·毀損된 경우에는 撤回할 수 없다.⁷⁷⁾ 그리고 契約書의 交付事實 및 그 時期 目的物의 引渡등의 事實 및 그 時期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賣渡人이 이를 立證하여야 한다(同法 제 5조 3항). 各國의 立法과 比較해 볼 때 우리의 경우 賣渡人에게 撤回의 意思表示가 記載된 書面을 利用하도록 하고 있으나, 프랑스와 미국 등의 方法을 利用하는 것이 더욱 效率的 이라고 생각된다. 다만 우리의 경우도 大企業의 경우에는 賣買契約書에 撤回通知의 書式을 明示하고 있는 바람직한 例示를 주고 있지만⁷⁸⁾ 國民의 意識이 아직은 書面(書式)에 依함이 未洽하기 때문이다. 또한 買受人의 責任있는 事由로 目的物을 滅失·毀損한 경우에는 撤回할 수 없다고 하나, 독일의 경우에는 이 때에도 撤回權을 認定하고 다만 賣渡人에게 物件의 價額이나 價値減少分을 補償하면 된다(제 1d조 1항). 이 條項이 消費者保護 側面에서 볼 때 더 좋지 않을까 생각된다.

(4).撤回權 留保의 周知 및 拋棄

各國이 撤回權에 관하여 契約書에 明白한 表現으로 記載하고 있으며 우리의 경우도 割賦去來法 제 4조에서 契約의 書面主義를 1항 8호에 必要的 記載事項으로 要求하고 있다. 書面記載時 9호以上の 活字를 使用하여야 하며(同法 施行規則 제 2조 1항), 독일 처럼 當事者間의 撤回權의 排除나 拋棄에 관한 合意는 效力이 없다는 直接的인 規定은 없지만, 同法 제 13조에 “撤回權의 規定에 의한 內容보다 買受人에게 不利한 것은 效力이 없다”規定하고 있으므로 이에 의하여 撤回權의 排除 및 拋棄의 合意는 效力이 否定되는 것이다.

77)대우전자 주식회사, 대금불입약정서, 제 9조 4항.

대우, 현대, 쌍용, 기산등의 자동차회사, 자동차 매매계약서, 제 7조 1항.

78)대우전자 주식회사의 대금불입약정서 및 대우, 쌍용, 현대, 기산등의 자동차 매매계약서에는 철회통지의 서식을 명시하고 있다.

(5).撤回權의 效果

①. 撤回하는 경우에는 買受人은 이미 引渡받은 動産 또는 提供받은 用役을 返還하여야 하며, 賣渡人은 이미 支給받은 割賦金을 同時에 返還하여야 한다(同法 제 6조 1항). 이는 兩當事者의 原狀回復義務로서 當然한 것이다. 그리고 이 義務는 同時履行關係에 있는 것이다(同法 제 6조 1항 후단). 民法上의 契約解除는 原狀回復義務와 損害賠償義務이지만 撤回權에서는 原狀回復義務만이 있다. 또한 賣渡人은 이미 用役이 提供된 경우에는 이미 提供된 用役과 同一한 用役의 返還이나 그 用役의 對象 또는 그 用役에 의하여 얻어진 利益에 相當하는 金額의 支給을 請求할 수 없다(제 6조 2항). 따라서 이 權利를 行使하여도 買受人과 賣渡人은 不利益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目的物의 返還에 必要한 費用은 賣渡人이 이를 負擔하며, 賣渡人은 買受人에게 違約金이나 損害賠償을 請求할 수 없도록 하였다(제 6조 3항).

②. 信用提供者가 있는 買受人의 撤回는 (이 去來의 形態는 金融割賦去來로서 買受人의 分割支給을 可能케 하는 信用과 제3者에 의한 販賣信用이 結合한 類型) 買受人이 契約書를 交付받은 날 또는 契約書를 交付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目的物의 引渡를 받은 날로부터 7日以內에 買受人이 信用提供者에게 目的物의 代金を 2月以上의 期間에 걸쳐 3回以上 分割하여 支給하고, 그 代金の 完納前에 賣渡人으로부터 目的物의 引渡등을 받기로 하는 契約에 있어서, 撤回하는 경우에는 위의 期間內에 撤回의 意思表示가 記載된 書面을 信用提供者에게 發送하여야 한다(同法 제 7조 1항). 만일 買受人이 書面을 發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信用提供者의 割賦金支給請求에 對抗하지 못한다. 다만 信用提供者가 위의 期間內에 賣渡人에게 目的物의 代金を 支給한 경우에는 買受人이 그 書面을 發送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信用提供者의 割賦金支給請求에 對抗할 수 있다(同法 제 7조 2항).

실제 契約書의 約款內容에서도 「買受人은 契約書를 交付받은 날 또는 契約書를 交付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目的物의 引渡등을 받은 날로부터 7日以內에 契約에 관한 請

約을 撤回할 수 있다」 또한 「買受人의 撤回權 行使는 위 期間內에 撤回의 意思表示가 記載된 書面을 賣渡人에게 發送함으로써 效力이 發生한다」. 그리고 「買受人이 適法하게 撤回權을 行使한 경우 賣渡人은 이미 支給받은 契約金 등을 買受人에게 返還하고 買受人은 이미 引渡받은 目的物을 賣渡人에게 返還하여야 한다」. 등의 條項은 割賦去來法 제 5조 및 6조의 內容 그대로이지만 本法 施行以後로 각 契約書의 約款 條項에 明示되어 있고.⁷⁹⁾ 또한 撤回權行使의 制限條項까지 明示하고 있으며,⁸⁰⁾ 그리고 同法 施行規則 제 3조에 規定에 정한대로 붉은 색으로 記載하고 테두리도 치고 있다. 그러나 제 3조1항3호의 規定에 의한 買受人의 撤回權行使를 위한 書式을 包含시킬 것을 規定하고 있으나 잘 이행되고 있지 않는것 같다.⁸¹⁾

8). 買受人의 抗辯權條項(代金支給拒絕權)

契約한 目的物의 全部 또는 一部 引渡되지 않거나, 引渡된 目的物에 瑕疵가 있는 경우에는 買受人은 交換이나 修繕을 請求할 수 있다. 그러나 交換이나 修繕을 請求하였는데도 賣渡人이 이에 不應하면 賣渡人이 債務不履行이 되므로 買受人은 割賦金의 支給을 拒絕할 수 있음은 當然한 것이다. (割賦去來法 제 12조) 이 경우 代金を 支給하지 않는다는 抗辯은 買受人이 賣渡人에게 義務를 履行시키기 위한 가장 強力한 手段이다. 商品引渡義務는 販賣業者이고, 買受人의 代金支給의 相對方은 金融機關이나 信用

79) 현대자동차서비스 주식회사, 매매계약서, 제 6조 1~3항
대우자동차 주식회사, 자동차매매계약서, 제 6조 1~3항
주식회사 기아산업, 자동차매매계약서, 제 6조 1~3항
쌍용자동차 주식회사, 자동차매매계약서, 제 6조 1~3항
대우전자 주식회사, 대금불입약정서, 제 9조

80) 대우자동차 주식회사, 자동차매매계약서, 제 7조 1~3항
주식회사 기산, 자동차매매계약서, 제 7조 1~3항
쌍용자동차 주식회사, 매매계약서, 제 7조 1~3항
현대자동차서비스 주식회사, 매매계약서, 제 7조 1~3항
대우전자 주식회사, 대금불입약정서, 제 9조 1항 1~4호

81) 현대 대우 쌍용 기산 등의 자동차 회사 및 대우전자 주식회사는 서식을 갖추고 있다.

販賣會社인 경우 法律的으로는 買受人의 抗辯의 相對方은 販賣業者이기 때문에 金融機關 또는 信用販賣會社 등의 支給請求에 拒絶하려고 해도 그것은 他人에 대한 抗辯을 主張하는 것이라 하여 紛爭의 所持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경우를 對備하여 割賦去來法 제 12조 2항 및 3항에 規定을 두고 있다. 그 規定內容은 “割賦價格이 大統領令이 정한 金額以上인 경우에 限하여 信用提供者에게 割賦金의 支給拒絶意思를 通知한 後 그 割賦金의 支給을 拒絶할 수 있다” 여기서 大統領令이 정한 金額은 同法 施行令 제 6조에 規定되어 있고 그 額은 10만원 以上이며 신용카드를 使用하여 割賦去來 한 경우에는 20만원 以上을 말한다. 그리고 信用提供者에게 支給을 拒絶할 수 있는 金額은 支給을 拒絶할 當時에 買受人이 信用提供者에게 支給하지 아니한 나머지 割賦金이다(同法 제 12조 3항).

제 3. 割賦販賣에 있어서 消費者의 實態調査

1. 序說

1). 調査對象者の 一般事項

消費者를 對象으로한 割賦販賣의 實態調査에서는 1991년 10월부터 1992년 10월까지 (割賦去來法 施行前後로 하여) 釜山을 위주로 한 서울 大邱 馬山등에서 160명을 相對로 調査하였고 그 一般事項은 다음과 같다.

(1). 性別

男: 88명 - 55% 女: 72명 - 45%

調査對象者の 性別의 均衡을 맞추려고 努力하였다.

(2). 年齡

10대: 2명 - 1.25% 20대: 74명 - 46% 30대: 37명 - 23.1%
40대: 32명 - 20% 50대: 14명 - 8.8% 60대: 1명 - 0.6%

(3). 學歷

無學: 1명 - 0.6% 國卒: 6명 - 3.75% 中卒: 9명 - 5.6%
高卒: 63명 - 39.3% 大在: 47명 - 29.3% 大卒: 30명 - 18.7%

(4). 地域

부산

동구: 6명 - 3.75% 동래구: 7명 - 4.3% 금정구: 5명 - 3.12%
서구: 7명 - 4.3% 부산진구: 10명 - 6.25% 중구: 1명 - 0.6%
남구: 17명 - 10.6% 해운대구: 4명 - 2.5% 강서구: 2명 - 1.25%
북구: 5명 - 3.12% 영도구: 55명 - 34.3% 사하구: 8명 - 5%
서울: 13명: - 8.13% 대구: 5명 - 3.12% 마산: 18명 - 11%

2. 調査內容

調査內容은 ① 割賦販賣의 購買內容 ② 約款에 대한 消費者의 認識(割賦販賣法 實施前後를 對比하여) ③ 割賦金에 대한 消費者의 意識 ④ 割賦販賣에 있어서 消費者의 權利 및 購入後 消費者의 態度 ⑤ 割賦販賣法에 관한 消費者의 認知度 등을 中心으로 하였다.

1) 割賦販賣의 購入內容

購入內容을 알아 보기 위하여 購入한 商品의 種類, 購入處, 割賦의 形態, 割賦의 支給期間 및 割賦의 種類, 割賦金支給方法, 割賦購入의 情報, 購入動機, 商品購入時 必要度, 商品의 引導時期 등으로 大別하여 調査하였다.

(1) 商品의 種類

서적: 28명 - 17.5% 냉장고: 18명 - 11% 오디오: 15명 - 9.4%
 세탁기: 14명 - 8.8% 자동차: 10명 - 6.3% VTR: 10명 - 6.3%
 취사도구: 10명 - 6.3% TV: 10명 - 6.3% 전자렌즈: 8명 - 5%
 영어TAPE: 8명 - 5% 카세트: 7명 - 4.3% 카메라: 5명 - 3.1%
 의류: 3명 - 1.8% 싱크대: 2명 - 1.3% 석유팬히터: 2명 - 1.3%
 자석요: 2명 - 1.3% 피아노: 1명 - 0.6% 청소기: 1명 - 0.6%
 자전거: 1명 - 0.6% --- 調査結果 消費者들이 經濟水準의 向上으로
 文化的 生活을 구가하려는 傾向을 여실히 나타내고 있다.

(2) 商品의 購入處

代理店: 92명 - 57.5% 販賣員: 59명 - 36.8% 小賣店: 2명 - 1.3%
 기타: 7명 - 4.3%

代理店과 販賣員을 통하여 購入하는 것이 95%이상을 점하고 있고 販賣員은 주로 訪問販賣를 통하여 購買擴大를 꾀하고 있으므로 訪問販賣에 對備하여 同法이 制定되어 施行되고 있어 多幸한 일이다.

(3) 割賦의 形態

割賦의 유형은 月賦: 153명 - 95.6%, 年賦: 4명 - 2.5%, 日賦: 3명 - 1.9% 週賦: 0명 - 0% 등으로 나타났고 月賦形態가 絶對적이고 週賦가 없는 것도 首肯은 가지지만, 極少數의 日賦制度가 있어 疑訝했으나, 이것은 割賦去來法이 施行되기 이전 그릇류에서 찾아볼 수 있었지만, 追後 調査結果 지금은 그러한 日賦形態는 거의 없었다. 그리고 月賦의 形態를 調査結果한 結果 純粹一般月賦가 107명으로 66.6%을 점하고, 팩토링月賦가 23명에 14.3% 積立金月賦形式이 18명에 11.2%이고 티켓식이 5명에 3.1%을 점하고

있어 이제는 割賦販賣에도 多樣한 形式이 導入되고 있다. 따라서 積立金 및 티켓식 方式의 規制에 필요한 措置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① 月賦의 支給期間

3개월: 9명 -5.6% 4개월: 3명 - 1.8% 5개월: 3명 - 1.8%
6개월: 25명 -15.6% 7개월: 2명 -1.3% 8개월: 8명 - 1.5%
9개월: 2명 -1.3% 10개월: 36명-22.5% 11개월:0명 - 0%
12개월: 36명 - 22.5% 13개월: 1명 -0.6% 14개월:4명-2.5%
15개월:5명 -3.1% 16개월:1명 -0.6% 17개월: 0명 -0%
18개월: 7명 -4.3% 20개월:3명 -1.8% 24개월:8명 -5%
30개월:2명 -1.3% 36개월:1명 -0.6%

月賦의 期間은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같이 주로 1년의 範圍內에서 割賦販賣가 形成되는 것이 一般的이다.

(4). 割賦金の 支給方法

銀行에 가서 支給한다: 131명 - 81.8%, 消費者가 直接 購入處에
支給한다: 23명 - 14.3%, 收金社員에게 支給한다: 6명 - 3.9%

過去の 支給方法은 收金社員을 통하여 支給하는 경우가 많아서, 收金社員의 資質問題와 關聯한 未拂入 事態發生으로 인한 紛爭이 잦았으나 調査結果 이러한 理由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銀行에 가서 支給하는 比率이 絶對적으로 높아져 바람직한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5). 割賦購入情報

商品購入時 누구의 情報를 통하여 購入하였는가를 調査한 結果 다음과 같이 나타났

다.

販賣員: 53명 - 33.1% 代理店の 廣告: 40명 - 25%
新聞, 雜紙: 25명 - 15.6% 親舊, 親戚: 20명 - 12.5%
TV, 라디오: 10명 - 6.3% 其他: 12명 - 7.5%

販賣員을 통한 購入 못지 않게 매스콤을 통한 廣告로 購入하는 것이 絶對的이므로 앞에서 言及한 바와 같이 廣告는 대개 請約을 構成하지 않으므로 廣告의 規制가 實際로 締結되는 契約의 條件들을 必然的으로 規制하는 것은 아니지만, 不適切한 廣告를 不公正競争과 類似한 것으로 把握하여 割賦販賣形態로 提供되는 商品들의 價格에 관한 모든 廣告는 現金價格, 割賦價格, 請約金額, 割賦回數 程度의 情報를 答아야 한다는 規制 程度는 必要하다. (예컨대, 스위스, 벨기에, 미국, 영국, 등은 그 內容은 조금 相異하지만 法制化하고 있다.)

(6). 商品購入의 動機

商品을 어떤 動機에 의하여 購入하였는가에 대하여

- ① 적은 額으로 分割購入 可能하므로: 81명 - 50.6%
- ② 一時拂로 購入하기 어려워: 51명 - 31.8%
- ③ 必要性은 못느끼나 販賣員, 親知, 親舊의 事情을 考慮하여:
18명 - 11.3%
- ④ 기타: 10명 - 6.3%

위의 結果에서 보는 바와같이 說問의 ① 과 ②가 積하는 比率이 82%를 上廻하므로 消費者의 購買意思는 割賦販賣制度의 本質과 一致하고 있다.

(7). 商品購入時 必要度

- ① 꼭 必要해서 購入: 95명 - 59.3%

- ② 꼭 必要치 않으나 販賣員, 親知, 親舊의 勸誘: 30명 - 18.7%
- ③ 廣告등의 誘惑에 의하여: 16명 - 10%
- ④ 당장은 必要치 않으나 財産增殖을 考慮: 10명 - 6.3%
- ⑤ 기타 : 9명 - 5.6%

설문의 ②, ③, ④의 비율이 35% 程度 되므로 이것은 消費者의 購買心理에 問題가 있고, 아울러 消費者의 規模있는 消費生活이 要望되는 證據이다.

(8).商品의 引導時期

商品을 어느 時期에 引渡 받았는 가의 說問에

契約後 契約金 支給前: 86명 - 53.8%

契約後 契約金 支給後: 71명 - 44.4%

몇번의 割賦金 支給後: 3명 -1.8% 全額支給後: 0명 -0%

一般的으로 賣買에 있어서는 契約合意--契約金支給--商品引渡가 普遍的인 節次이나 調査結果 契約金 支給前에 商品의 引渡가 가장 높은 比率을 점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점점 信用社會로 發展해 가는 것 같다.

2).約款에 관한 消費者의 事前知識 및 認識

(1).約款에 관한 消費者의 事前知識과 認識을 알아보기 위하여 割賦販賣①契約方式, ②契約書의 作成方式, ③契約當事者, ④擔保設定關係, ⑤契約約款의 認知度등을 中心으로 調査하였다.

①. 契約方式은 書面으로 契約書를 作成하였습니까 혹은 口頭로써 契約를 締結하였습니까.

應答者 120명 중 書面으로 契約을 締結한 者는 116명 이었고 口頭로 契約한 者는 4명에 不過하였다. 그러나 割賦販賣法 施行後 契約을 締結한 者는 26명 이었고 모두 書

面으로 契約을 締結하였다. 方式의 自由를 制限하여 消費者를 保護하려는 좋은 結果라고 생각된다.

②. 契約書 作成方法은 이미 印刷된 契約書에 記名·捺印하였습니까, 아니면 當事者 合意로 契約書를 作成하였습니까.

應答者 120명 중 115명이 이미 印刷된 契約書에 記名·捺印하여 契約을 締結하였고 割賦販賣法 施行後 契約한 26명은 모두 印刷된 契約書로 하였다.

割賦契約이 大部分 附合契約으로 締結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③. 記名·捺印方法은 ㉠. 賣渡人의 說明도 듣고 契約書 內容도 다 읽어 보고 記名·捺印 하였다. ㉡. 賣渡人의 說明은 들었으나 契約書 內容은 조금 읽어 보고 記名·捺印 하였다. ㉢. 賣渡人의 說明만 듣고 契約書 內容은 읽어 보지 않고 記名·捺印 하였다. ㉣. 賣渡人의 說明도 없었고 契約書 內容도 읽어보지도 않고 記名·捺印 하였다.

應答者 120명 중 例文 ㉠경우 46명 ㉡경우 30명 ㉢경우 44명 ㉣경우는 없었다. 意外로 ㉡㉣경우가 많아서 消費者의 意識을 높일 必要가 要望되었으나 割賦去來法 施行이 후 契約한 者는 모두 例文 ㉠의 範疇에 속하였다.

④. 契約은 누구와 締結하였습니까.

應答者 120명 중 ㉠. 代理店에서 締結하였다가 73명 ㉡. 販賣員으로부터가 45명 ㉢. 小賣店으로부터 2명이었다. 割賦去來法 施行前에는 販賣員의 勸誘에서 合意가되면 그 자리에서 契約을 締結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施行이후 表示主義 賣渡人의 內容告知義務에 의하여 販賣員과 契約을 締結하는 경우는 相當히 감소되었다.

⑤. 契約締結후 契約書를 賣渡人으로부터 交付받았습니까.

應答者 120명 중 交付받은 者가 112명 이었고, 割賦販賣法 施行후 契約者는 모두 交付 받았다. 만약 交付하지 않은 경우는 割賦去來法 제 4조 3항에 違背되는 行爲로 同法 제 14조 1항 4호 違反으로 500만원 이하의 過怠料 處分을 받게된다.

⑥. 契約締結時 連帶保證人 設定要求가 있었습니까.

應答者 160명 중 124명은 設定要求가 없었고 36명만이 要求가 있었다고 應答하였다.

前述한 바에 의하면 자동차의 賣買約款에는 例外없이 要求되고 있었다. 現今에 있어서 賣渡人의 信用調査活用 및 保證保險制度活用 등으로 人的擔保인 連帶保證人設定은 去來의 圓滑性을 위해서도 必要치 않다고 思料된다.

⑦. 契約締結時 根抵當設定要求가 있었습니까.

應答者 중 143명은 없었고 13명만이 있었다고 應答했다. 이 設定要求도 자동차 賣買約款에는 例外없이 要求되고 있었다.

⑧. 約款條項의 認知與否

- ㉠ 所有權留保條項-----57명---35.6%
- ㉡ 連帶保證人條項-----62명---38.8%
- ㉢ 讓渡·貸與·擔保禁止條項-----32명---20%
- ㉣ 解除條項-----53명---33.3%
- ㉤ 期限利益喪失條項-----27명---16.8%
- ㉥ 損害賠償條項-----76명---47.5%
- ㉦ 住所變更告知條項-----66명---41.3%
- ㉧ 瑕疵擔保責任條項-----30명---18.8%
- ㉨ 裁判管轄條項-----8명---5%
- ㉩ 自力回收條項-----18명---11.3%
- ㉪ 交換返品禁止條項-----70명---43.7%
- ㉫ 다른 物品任意回收條項-----13명---8.1%
- ㉬ 民刑事不提訴條項-----15명---9.3%
- ㉭ 전부 모른다-----27명---16.9%

調査結果 50%를 넘고 있는 條項은 하나도 없고 順位別로는 損害賠償條項이 가장 높고 裁判管轄條項이 가장 낮았다(割賦去來法 施行前 調査結果에 의함). 全體條項을 다 알고 있는 者는 7명이었고 全部 모른다는 27명이나 되었다. 消費者들의 約款에 관한

認知度は 대단히 낮은 편이고, 이는 消費者 스스로가 契約의 重要性을 意識하고 있지 않음을 反證하며, 消費者에게는 啓蒙, 賣渡人에게는 說明·告知를 義務化하는 것이 좋겠다. 割賦去來法에서는 賣渡人의 說明·告知를 義務化 하였다(同法 제 3조)

⑧-1. 約款은 누구에게 有利합니까-----應答者---160명

①賣渡人에게 有利하다-----91명-----56.7%

②買受人에게 有利하다-----15명-----9.6%

③兩者 모두에게 有利하다-----20명-----12.8%

④잘 모르겠다-----34명-----21.7%

約款自體는 賣渡人을 위한 것임은 否定할 수 없는 事實임에도 買受人을 위한 것이다 혹은 잘 모르겠다고 답한 者들도 있어 約款에 대한 認識이 不足하다. 그러나 割賦去來法에서는 賣渡人의 說明·告知의 義務化(同法 제 3조), 所有權留保條項 解除條項 期限利益喪失條項 撤回權條項등을 必要的 記載事項으로 하였고(同法 제 4조), 또한 契約書 作成方法에 있어서도 9호以上の 큰 活字의 使用 및 붉은 색으로 記載하고 테두리를 치게한 것은 制度的으로 낮은 認知度를 補完할 수 있고, 나아가 消費者를 保護하는 條項이다(同法 施行規則 제 3조). 그리고 本法 施行以後로 自力回收條項 交換返品禁止條項 및 民刑事不提訴條項은 約款內容에서 찾아 볼 수 없었다.

3). 割賦金에 관한 消費者의 意識(買受人의 代金支給義務 違反)

買受人의 義務 중 가장 核心的 義務인 割賦金 支給義務에 대한 消費者의 意識과 割賦購入과 現金으로 購入하는 경우 消費者의 意識調査

①. 現金購入 때와 關係說問---應答者--160명

① 割賦金이 약간 비싼 줄 알지만 購入했다. -----76명--48.8%

② 割賦金이 매우 비싼 줄 알지만 購入했다. -----46명--29%

③ 一時拂로 支給할때 그 利子와 比較하면

그렇게 비싸지 않아 購入하였다. -----27명--16.8%

- ④ 割賦金이 現金價格과 같은 것으로 알고 購入하였다.--9명--5.6%
- ②. 割賦金の 支給은 -----應答者160명
 - ① 기일內에 支給하였다-----97명---60.6%
 - ② 違反한 일이 있다-----63명---39.4%
- ③. 違反한 경우-----應答者---63명
 - ① 每回 違反하였다-----8명
 - ② 1~2회 違反하였다-----44명
 - ③ 3~4회 違反하였다-----11명
- ④. 違反時 賣渡人의 措置는
 - ① 支給督促이 있었다-----53명
 - ② 契約解除通知가 書面으로 왔다-----9명
 - ③ 口頭로 契約解除 通告하였다-----1명
- ⑤. 契約解除後 -----應答者---20명
 - ① 곧 바로 商品을 回收해 갔다----- 10명
 - ② 며칠 後에 가져갔다-----10명
- ⑤-㉠ 同意를 얻어서 가져갔다-----12명
- ⑤-㉡ 任意로 가져갔다-----8명
- ⑤-㉢ 支給한 賦金을 返還要求하였다-----12명
- ⑤-㉣ 返還要求하지 않았다-----8명
- ⑤-㉤ 그때까지 支給한 賦金을 全部返還받았다---4명
- ⑤-㉥ 半額정도 받았다-----8명
 - 1/3정도 받았다-----1명
 - 전혀 받지 못했다-----7명

위의 說問內容은 割賦去來法 施行前의 調査內容이며, 支給督促이나 契約解除의 措置

는 賣渡人에게 當然히 認定되는 權利이지만 兩當事者는 同時履行의 關係에 있고, 위의 內容에 관한 具體的 對處內容에 관해서 割賦去來法은 제 8조 및 제 9조에 詳細히 規定하고 있다. 本法 施行後에는 제 8조에 의한 節次에 따라 解除하고 제 9조에 정한 內容에 의하여 精算하였다고 한 者도 있었다.

4).消費者の 權利

賣渡人の 瑕疵에 대한 擔保責任, 交換權 및 品質保證과 賣渡人の 瑕疵擔保期間 등에 관하여 調査하여 보았다.

(4)-1 買受人의 過失에 의한 故障 --- 應答者123명

- 代金を 더 주고 交換하였다-----18명---14.6%
- 代金を 안 주고 交換하였다-----32명---26%
- 修繕費 全額을 주고 修繕하였다-----37명---30%
- 修繕費 半額程度 주고 修繕하였다-----13명---10.5%
- 修繕費 1/3정도 주고 修繕하였다-----9명---7.3%
- 修繕도 交換도 없었다-----14명---11.3%

買受人이 善良한 管理者로서 注意를 다하여 目的物을 保管하고 使用하였어도 자신의 不注意로 故障을 發生시켰을 경우 그 責任을 져야 한다. 그러나 修繕도 해주지 않은 것은 問題이다.

(4)-2 買受人의 過失에 의하지 않은 故障--- 應答者---137명

- 代金を 더 주고 交換하였다---10명--7.3%
- 代金を 안 주고 交換하였다---82명--60%
- 修繕費 全額을 주고 修繕하였다---11명---8%
- 修繕費 半額정도 주고 修繕하였다---7명--5.8%

修繕費 1/3정도 주고 修繕하였다-----8명--5.8%

修繕도 交換도 없었다-----19명---14%

交換과 修繕은 賣渡人의 瑕疵擔保責任法理에 의한 當然한 것인데 買受人에게 一部를 負擔시키고 더 나아가 交換·修繕을 해주지 않은 것은 賣渡人의 橫暴이다. 위와 같은 事例의 경우 割賦去來法 제 12조 1항 3호에서 買受人에게 抗辯權을 認定하고 있다.

(4)-3 修繕·交換 期間-----147명

3일 以內:13명-9.2% 1주일 以內:48명-32% 10일 以內:16명-11.3%

2주일 以內:5명-3.5% 3주일 以內:3명-2.1% 1개월 以內:28명-19.8%

1개월 이상:28명:-19.8%

(5). 瑕疵擔保責任---應答者--156명

代理店에 묻는다---93명--59%

製造會社에 묻는다---26명--17%

판 販賣員에게 묻는다---29명--18.2%

판 小賣店에 묻는다---8명--5.3%

(5)-1 交換權 및 品質保證書---156명

받았다---98명--63%

받지 않았다---57명--37%

(6). 割賦制度는 누구를 위한 制度일까:156명

賣渡人을 위하여:40명-25.4

買受人을 위하여:33명-21%

兩者 모두를 위하여:78명-49.6%

國民經濟를 위하여:6명-3.8%

5). 割賦販賣法에 관한 消費者의 認知度

本說問은 割賦去來法 施行이후 消費者들의 割賦去來法에 대한 內容의 認知程度 및 消費者 啓蒙次元에서 調査하여 보았다.

(1). ①. 賣渡人이 割賦賣買契約을 締結하기 前에 買受人에게 一定事項을 表示하고 이를 買受人에게 告知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또한 ②. 알지 못한 경우라도 割賦販賣契約時 賣渡人이 告知한 것을 듣고 契約을 하였습니까.

說問 ①. 은 割賦去來法 제 3조의 內容으로 買受人으로 하여금 誤解가 없도록 周知시켜 紛爭을 防止하고 契約의 公正性을 기하기 위하여 契約方式의 自由에 制限을 가한 賣渡人의 義務條項이나, 설문 ①의 應答者 120명 중 4명만이 알고 있다고 應答하였고, 나머지 116명은 알지 못한다고 했다. 說問 ②의 경우 實際 割賦契約을 締結한 40명중 36명만 賣渡人이 說明한 것을 듣고 契約을 締結했다고 應答하였고, 4명은 아니었다. 契約書의 大部分은 割賦販賣法이 정한 表示主義를 履行하고 있었나 極少數의 販賣業者는 契約書 內容을 過去의 것을 그대로 使用하였고 買受人에게 告知(說明)도 하지 않았다. 說問 調査結果 4명중 2명은 家具 또 2명은 그릇 購入者이었다. 이 같은 行爲自體는 本법 제 4조 4항에 違背됨과 同時에 제 14조에 의하여 當然히 處罰을 받아야 한다.

(2). 割賦契約은 商工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一定事項을 記載한 書面으로 締結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說問의 內容은 割賦去來法 제 4조의 內容으로서 割賦去來에 있어서는 支給關係가 長期間에 걸쳐 繼續되기 때문에 契約內容이 複雜하고 또한 衝動購買로 行하여지는 경우가 許多하기 때문에 買受人에게 그 內容을 周知시켜 紛爭을 防止함과 同時에 契約의 公正性을 기하기 위한 趣旨이다. 그러나 說問의 調査結果 應答者 120명 중 26명만이 알고 있다고 應答했고 나머지 84명은 알지 못한다고 應答하였다. 26명은 實際契約을

통하여 알게 된 것이 大部分이었다.

(2)-1. 割賦契約 內容의 表示方法은 事業所에 揭示하거나 書面으로 揭示할수 있는데 書面으로 揭示하는 경우 9호以上の 큰 活字를 使用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위의 說問의 內容은 同法 施行規則 제 2조 1항의 內容으로 消費者들이 契約內容을 잘 周知할 수 있도록 하여 紛爭의 防止에 그 趣旨를 두는 것으로 큰글자로 쓰여 있는 것은 보았지만 그것이 몇호以上인 지는 알지 못하고 있었다. 調査結果 大部分의 契約書는 이에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3). 다음은 割賦契約時 商工部令이 정한 割賦契約의 書面主義 內容입니다 內容중 알고 있는 部分을 表示해 주십시오.

- ①. 賣渡人·買受人 및 信用提供者의 姓名 및 住所
- ②. 目的物의 種類·內容 및 目的物의 引渡등의 時期
- ③. 現金價格 및 割賦價格
- ④. 各 割賦金의 金額·支給回數 및 時期
- ⑤. 割賦手數料의 實際年間料率
- ⑥. 目的物의 所有權의 留保에 관한 事項
- ⑦. 買受人의 撤回權과 行使方法에 관한 事項
- ⑧. 賣渡人의 割賦契約의 解除에 관한 事項
- ⑨. 買受人의 期限利益 喪失에 관한 事項

위의 예문 ③④의 內容은 買受人이 去來條件을 充分히 檢討함과 同時에 去來의 內容을 明確하게 하기 위한 것이며, 例文 ⑤의 경우 현실로 提供받은 金額 및 그 金額이 信用提供을 받은 期間에 嚴密히 比例하도록 算出된 것이다.

說問 調査結果 例文 ①의 경우 應答者 120명 중 118명이 알고 있다고 應答하였다. 例文 ②의 경우 알고 있다가 96명 알지 못하다가 14명으로 豫想밖으로 알고 있는 者가

많아서 그 理由를 再調査한 結果 一般的인 契約經驗에서 얻어진 것이었다. 그러므로 본법 施行以後에는 販賣業者들이 割賦去來法의 規定에 따라 契約하고 있는 것 같다. 예문 ③의 경우 알고있다가 108명 알지못한다가 12명으로 이것도 割賦契約時 通常的으로 買受人이 賣渡人에게 現金價格과 割賦價格의 差異를 묻는 것이 一般的이며, 賣渡人도 買受人이 質問前에 告知해 주는 것이 通常的이었다. 예문 ④의 경우 112명이 알고 있고, 알지 못한다가 8명이었다. 例文 ⑤의 경우 알지 못한다고 應答한 者が 많았고, 그 수는 108명이었다. 說問 (2)에서 實際契約한 當事者 26명은 모두 具體的인 內容을 다 알고 있지는 않았다. 따라서 아직도 割賦契約 締結時 具體的 內容을 認知하지 않고 契約을 締結하는 傾向이 높지 아니하므로 賣渡人으로 하여금 買受人에게 徹底한 告知 및 說明이 필요하므로 행정적 지도가 要望된다. 그리고 例文 ⑤에서 ⑨까지는 다시 細分하여 調査하였다.

(4). 實際年間料率의 計算方法과 最高限度는 大統領令으로 정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應答者 120명 중 2명을 除外하고 모두 알지 못하고 있었다.

(5). 買受人의 撤回權制度를 알고 있습니까. 또한 契約書를 交付받은 날 또는 目的物의 引渡등을 받은 날부터 7日以內에 請約을 撤回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應答者 120명 중 26명이 알고 있었고, 7日以內에 하여야 하는 것은 契約 當時에는 說明을 들어 알고 있었으나 지금은 몇일인지 잘 알지 못한다고 應答한 者도 7명 있었다.

(6). 撤回權의 行使는 書面으로 行使하여야 하며 또한 撤回의 意思表示의 效果는 發信(發送)主義인 것을 알고 있습니까.

行使는 書面으로 하여야 한다는 26명이 알고 있다고 應答했으나 意思表示의 效果는

發信主義인 것을 알고 있는 者는 11명에 不過하였다.

(7). 撤回되면 引渡된 物品과 支給된 割賦金이 同時返還(同時履行)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應答者 120명 중 26명이 알고 있다고 應答하였다.

(8). 買受人이 割賦金 支給義務를 履行하지 아니한 경우 賣渡人은 그 契約을 解除할 수 있습니까 또한 賣渡人은 그 契約을 解除하기 前에 14日以上の 期間을 定하여 買受人에게 그 履行을 催告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할 수 있다”라고 應答한 者가 112명이며 催告期間에 대하여 알고 있는 者는 11명에 不過하였다.

(9)-1. 자동차 냉장고 세탁기 날개로 밀봉된 음반·비디오 및 소프트웨어같이 使用에 의하여 가치가 顯著히 減少될 憂慮가 있는 이같은 物件들을 使用한 경우에도 撤回가 可能 할까

本說問은 本法 제 5조 1항 단서의 內容으로 買受人이 撤回權을 行使할 수 없는 경우를 大統領令으로 정한 것으로 本法 施行令 제 4조 1항의 內容을 日常生活에서 많이 利用하는 物品을 選擇하여 조사하였으나 應答者 120명 中, 할 수 있다로 應答한 者가 36명, 할 수 없다가 11명, 잘 알지 못하나 할 수 있다고 한 者가 65명이고, 잘 알지 못하나 할 수 없다가 8명으로 나타났다. 이 說問結果 撤回權行使를 하지 못하는 目的物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한 契約締結前에 賣渡人의 徹底한 告知·說明 및 弘報의 必要性이 切實히 要望된다.

(9)-2. 割賦價格이 10만원 以下인 경우에도 撤回權을 行使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다로 應答한 者가 39명, 할 수 없다로 應答한 者가 4명, 잘 알지 못하나 할

수 있다고 한 者가 72명, 잘 알지 못하나 할 수 없다고 應答한 者가 5명으로 나타났다. 說問結果 消費者의 意識은 目的物의 價格이 싼 경우는 더욱 撤回가 容易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反對의 意識을 가지고 있었다. 契約締結前에 賣渡人의 徹底한 說明·告知 및 弘報가 要望된다.

(9)-3. 신용카드를 使用하여 割賦去來한 경우에 割賦價格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撤回權을 行使할 수 있을까요.

調査結課 說問 (9)-2의 경우와 같은 結課로 나타났다.

(9)-4. 撤回權 行使를 위하여 書式있는 契約書를 보았습니까.

보았다고 한 者는 15명이었고 주로 자동차 및 電子物品의 契約書에서 보았다고 應答하였다. 約款 調査結果 대부분 契約書에는 書式이 있었으나 없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았다. 規制·統制가 必要하다고 思料된다.

(10). 目的物의 所有權이 賣渡人에게 留保된 경우에 買受人 여러분들이 割賦金 支給 遲滯時에도 賣渡人은 그 契約을 解除하지 아니하고는 그 返還을 請求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應答者 중 11명만이 알고 있었다.

(11). 所有權留保에 관한 事項, 撤回權에 관한 事項, 契約解除에 관한 事項, 期限利益喪失에 관한 事項의 內容이 契約書에 붉은색으로 記載되어 있고 또한 테두리도 쳐 있는 것을 보았습니까.

說問調査 結課 割賦去來法 施行以後 契約한 者는 모두 보았다고 應答하였다. 잘 履行되고 있는 것 같았다.

(12). 割賦金を 다음 支給日까지 連續하여 2回以上 支給하지 아니하고 또한 그 支給하지 아니한 金額이 割賦價格의 1/10을 超過할 때만 期限利益을 喪失 當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應答者 중 4명만 알고 있었다

(13). 위의 說問 內容의 要件을 갖추지 못하거나 그 內容이 不確實한 경우에는 賣渡人과 特約이 없는 한 그 契約內容은 어떠한 경우에도 買受人에게 不利하게 解釋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應答者 중 4명만이 알고 있다고 應答하였으며 116명은 알지 못한다고 應答하였다. (賣渡人의 說明不足이거나 아니면 消費者들이 契約書를 잘 읽지않고 契約하는 素養不足이 아닐까 생각된다)

(14). 買受人은 期限이 到來하기 前에 割賦金を 完納하면 割賦手數料 一部를 控除 받을 수 있을까요.

應答者 중 26명이 알고 있다고 應答하였다. 이 條項의 制度的 趣旨는 全술하였지만, 82)割賦去來에 있어서 割賦金은 賣買代金이므로 期限의 利益은 買受人에게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買受人은 期間前이라도 現金價格으로 支給할 때까지의 手數料를 더한 金額을 支給하면 賣渡人의 利益을 해치는 것이 아니므로 買受人이 支給하는 金額은 나머지 割賦金에서 그 기간에 대한 割賦手數料를 控除한 金額으로 한 것이다. 이에 이 條項은 買受人의 利益保護를 위한 것이나 實際契約을 締結한 者 중에서도 이 條項의 內容을 알지 못한 者가 7명이나 되었다. 賣渡人의 買受人에 대한 必要的 告知事項은 아니나 많은 契約約款에서는 本條項에 대한 規定을 명문화하고 있으나 買受人의 인지는 낮은 편에 속한 것은 普遍的으로 契約當時 買受人의 契約締結 態度가 眞摯하지 못

82)本論文 割賦販賣의 比較法的 考察, 46면 참조

한 것 같다.

(15). 買受人은 다음과 같은 事由가 있는 경우에는 賣渡人에게 割賦金의 支給을 拒絶할 수 있는 制度(抗辯權 制度)를 알고 있습니까. 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割賦契約이 無效 取消 또는 解除된 경우 ②. 目的物의 全部 또는 一部가 引渡등의 時期까지 買受人에게 引渡 또는 提供되지 아니한 경우 ③. 賣渡人이 瑕疵擔保責任을 履行하지 아니한 경우 ④. 기타 賣渡人의 債務不履行으로 인하여 割賦契約의 目的을 達成할 수 없는 경우

應答者 120명 중 알고 있는 者의 數는 8명으로 생각보다는 적었다.

(16). 買受人이 商行爲를 目的으로 割賦契約을 締結하는 경우에도 이 法의 適用을 받을 수 있을까요.

說問의 應答者 120명 중 適用받지 못한다고 한 者는 4명에 不過했다.

제 4. 結語

實證的 考察을 통해 볼때 實際去來界에서는 割賦販賣 賣買契約書의 約款內容은 大部分 割賦去來法에 따른 內容을 充實히 包含하고 있다. 그러나 消費者의 實態調査에서 본 바 契約當事者인 消費者들은 約款內容에 대한 認知度도 낮고 契約을 締結하는 意識 또한 未洽하다. 施行된지 얼마되지 않았지만 割賦去來法에 대한 認知度 또한 相當히 낮다. 그나마 알고 있는 部分도 微弱하며 大部分 實際契約을 통하여 얻어진 것에 不過하였다. 따라서 實際契約締結時 賣渡人의 說明 또는 告知가 制度로서 法制化되어 있으나 割賦去來法이 豫想한 程度의 消費者保護의 效率性에는 未洽하다고 思料된다. 그 理

由는 施行期間등을 勘案하면 當然한 歸結이고 消費者自身들이 行爲當事者로서 意識變化를 가져야 함이 當然하지만, 보다 이 法의 目的에 부응하기 위한 方便으로서 弘報와 啓蒙이 要望된다. 그리하여 그 方案으로 消費者保護院을 통하여 하든지 혹은 소비자 정보센터를 設置하여 利用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된다.

參考文獻

國內文獻

- 郭潤直, 新訂版, 民法總則, 博英社, 1990
全訂增補版, 物權法, 博英社, 1989
再全增版, 債權總論, 博英社, 1989
再全增版, 債權各論, 博英社, 1989
- 金曾漢, 民法總則論, 博英社, 1980
物權法講義, 博英社, 1983
- 金曾漢, 新債權總論, 博英社, 1970
- 安二濬, 新債權各論(上), 博英社, 1970
- 金容漢, 民法總則論, 博英社, 1989
物權法論, 博英社, 1989
債權總論, 博英社, 1983
- 黃迪仁, 現代民法論 1 (總則), 博英社, 1981
現代民法論 2 (物權法), 博英社, 1983
現代民法論 3 (債權總論), 博英社, 1981
現代民法論 4 (債權各論), 博英社, 1985

- 金亨培, 債權總論, 日新社, 1990
債權各論, 博英社, 1990
- 李英俊, 民法總則, 博英社, 1990
物權法, 博英社, 1991
- 李銀榮, 債權總論, 博英社, 1989
債權各論, 博英社, 1989
約款規制論, 博英社, 1984
- 洪天龍, 消費者被害救濟論, 三英社, 1980
『割賦去來에 관한 法律의 概觀』, 考試界, 1992년 9월號
- 金基善, 再再訂補增版 韓國民法總則, 法文社, 1980
韓國物權論, 法文社, 1985
全訂版 債權各論, 法文社, 1973
- 郭潤直, 『所有權留保附賣買』, 法政, 1969. 4월호.
- 李根植, 『割賦賣買에 관한 問題點』, 法曹, 第 27卷 1號, 1978
- 金基善, 『特殊한 賣買』, 考試界, 1980년 9월號.
- 金基洙, 『所有權 留保附賣買와 所有權의 歸屬』, 考試界, 1976년 12號
- 金容漢, 『契約과 普通契約約款』, 考試研究, 1983년 7월號.
『擔保制度로서의 所有權留保』, 考試研究, 1986년 2월號
- 李在成, 『割賦賣買에 관하여, 普通去來約款의 研究』, 서울統合辯護士會, 1983
- 嚴英鎮, 『割賦販賣의 法律關係』, 大旺社, 1985
『割賦販賣에 있어서 撤回權制度』, 司法行政, 1986년 8월號
『割賦販賣에 있어서 所有權留保의 性質』, 考試研究, 1986년 2월
- 權五乘 『所有權留保附 賣買』, 考試研究, 1986년 11號
割賦賣買, 考試研究, 1986년 2월號
- 崔鐘吉, 『所有權留保附賣買의 法律關係에 관한 研究』, 서울大學校,

第 9卷 2號, 1967

『物權的 期待權論』, 司法行政, 1969 2월~6월호

鄭明煥, 『分割支給約款附賣買에 있어서의 法律問題』, 成大

社會科學, 第4집, 1966

魚寅義, 『月賦販賣와 消費者保護에 관한 考察』, 法學論考 第 13집,

清州大學, 1981

柳順鉉, 『割賦賣買에 관한 研究』, 清州大學 博士學位論文, 1987

申鍾澈, 『割賦賣買에 있어서의 消費者의 法的地位와

그 保護立法에 관한 研究』, 碩士學位論文集, 東亞大, 1982

『割賦販賣에 있어서 契約約款에 관한 考察』, (解釋論 中心으로)

韓國海洋大學, 海運研究所 論文集, 第 5輯, 1986, 7월

『割賦販賣의 考察』, 慶星大學校法學研究所,

慶星法學, 創刊號, 1991, 12

『割賦販賣의 比較法的 考察』-立法例 中心으로-, 韓國海法學會,

第 5輯, 1992, 12

日本文獻

我妻榮, 債權各論, 中卷一, 東京, 有斐閣, 1983

擔保物權法, 東京, 岩波書店, 1967

債權各論上卷, 東京, 岩波書店, 1964

幾代通, 民法總則, 東京, 青林書院新社, 1977

割賦賣買-所有權留保賣買, 契約法大系 2, 東京, 有斐閣, 1970

北川善太良, 現代契約法 1, 東京, 商事法務研究會, 1978

北川善太良·及川伍編, 消費者保護法の基礎, 青林書院新社, 1977

稻本洋之助 外, 民法講義 5 契約, 東京, 有斐閣, 1978

- 大野文雄. 矢野正則, 新版契約全書 1 (契約總說 賣買 交換),
東京, 青林書院新社, 1973
- 來栖三良, 契約法, 東京, 有斐閣, 1981
- 石田喜久 編, 民法 1 (總則 物權), 判例と學說 2, 東京, 日本評論社, 1977
- 四宮和夫, 民法總則(第3版), 東京, 弘文堂, 1983
- 星野英一, 民法概論 2 (物權, 擔保物權), 東京, 良書普及會, 1981
民法概論 4, 第2分冊 契約各論, 東京, 良書普及會, 1982
- 條塚昭次. 川井健, 物權法講義. 擔保物權法, 東京, 青林書院新社, 1982
- 於保不二雄, 新版債權總論, 東京, 有斐閣, 1972
- 柚木馨. 高木多喜男, 擔保物權法, 東京, 有斐閣, 1973
- 柚木馨, 注釋民法(14), 東京, 有斐閣, 1980
獨逸民法, 東京, 有斐閣, 1980
- 打田峻一. 稻村良平, 割賦販賣法, 東京, 第一法規出版株式會社, 1974
- 田中實. 山本進一, 增補版債權總論. 各論, 東京, 法學書院, 1977
- 五十風清 外, 民法の基礎知識(2), 東京, 有斐閣, 1979
- 伊藤進 外, 消費者的權利, 東京, 有斐閣, 1976
- 野口惠三, 賣買契約(判例に學ぶ), 商事法務研究會, 1979
- 大村敦誌, 契約と消費者保護, 民法講座 別卷 2, 東京, 有斐閣, 1990
- 林良平, 消費者保護と法の論理, 金融法務事情, 704號, 1974
- 竹内昭夫, 特殊販賣規制法, 東京, 商事法研究會, 1977
- 千葉恵美子, “割賦販賣法上の抗辯接續規定と民法”, 民商法雜誌,
創刊五十周年論文集(第 93卷臨時增刊號)(2), 東京, 有斐閣, 1986
- 林屋禮二, 讓渡擔保所有權留保と第3者異議の訴え,
民商法雜誌, (第93卷臨時增刊號1, 東京, 有斐閣, 1986
- 米倉命, 所有權留保の實證的研究, 東京, 商事法務研究會, 1978

流通過程における所有權留保再論, 法學協會百周年紀念論文集,

第 3卷, 東京, 有斐閣, 1983

永淵泰清, 割賦販賣の法律實務, 東京, 日本經濟新聞社, 1977

長尾治助, 約款と消費者保護の法律問題, 東京, 三省堂, 1981

現代契約法人門, 東京, きようせい, 1990

イギリス, 比較法研究, (No. 36), 東京, 有斐閣, 1974

黒住武市, 割賦販賣法の戰略, 東京, 商業界, 1965

島田和夫, フランス-, 比較法研究, (No. 36), 東京, 有斐閣, 1974

飯島紀昭, トイツ聯邦共和國比較法研究, (No. 36), 東京, 有斐閣, 1974

竹内昭夫, アメリカ, 比較法研究, (No. 36), 東京, 有斐閣, 1974 割賦販賣

の改正- 59년改正と今後の課題, シュリスト, No818, 1984

訪問販賣と消費者保護, シュリスト, No 808, 1984

加藤一良, 竹内昭夫(他), 消費生活と法(國民生活センタ:編),

第一法規出版社, 1981

加藤良三, 「クレジット・カート」(消費者信用取引法シリーズI), 千倉書房, 1977

清水誠, スイス・ヘルキ-, 比較法研究, No 36, 東京, 有斐閣, 1973

消費者救済の基本的え方について, 法律時報, 第 46卷 11號, 1974

俗川久, 動産割賦販賣契約における債權確保のための諸條項と問題點,

法學雜誌, 第 10卷 3號, 1964

大村須賀男, 普通取引約款における内容的限界について, 神戸法學誌,

第4卷 4號, 1964

金子光, 消費者の權利と廣告表示, 法律時報, 第 48卷 3號, 1976

稻葉健次, 割賦販賣法の改正の概要と運用上の問題點, シュリスト,

No. 818, 1984

稻村良平, 割賦販賣における諸問題, 私法, 第 24號, 1962

- 未川博, 月賦販賣と所有權留保, 債權(未川博法律論集3), 東京, 岩波書店, 1970
- 石田文次良, 擔保作用よる見たる所有權留保契約, 法律時報,
第 41卷 6號, 1981
- 神田博司, 割賦販賣, 田中實, 山本進一 編, 増補版 債權總論, 各論-
重要問題と解説, 東京, 法學書院, 1977
- 深見義一, 分割拂販賣制發達史考, 法律時報, 第 27卷 3號, 1955
- 伊藤英樹, 割賦拂債務の懈怠と時效の起算點, 板橋郁夫外, 増補版民法總則,
物權法(判例演習シリーズ- 民法 1), 東京, 成文堂, 1980
- 田中整彌, 所有權留保賣買をめぐる占有關係-主としてドイツ法を中心として,
民商法雜誌, 第 78 卷 臨時増刊號(1)(未川博先生追悼論集,
法と權利1) 東京, 有斐閣, 1978
- 本田純一, 消費者問題と契約法理, 法律時報, 第 60卷 9號, 1990
- 船越隆司, 割賦販賣契約, 現代契約法大系, 第 4卷, 東京, 有斐閣, 1985
- 神田宗吉, 『所有權留保賣買における法律關係』, 上智法學論集,
第 20卷 1號, 2號, 1985
- 栗田隆, 『會社更生と所有權留保』, 關西大學法學論集, 33卷 1號, 1991
- 神崎克良, 『所有權留保賣買とその展開』, 神戸法學雜誌, 14卷 3號, 1972
- 竹下守夫, 『所有權留保と破産會社更生』, 法律時報, 25卷 2虎 3號, 1981
- 矢欽徹雄, 所有權留保と倒産手續, 季刊. 民事法研究, 1984 NO. 514,
臨時増刊 判例 タイムス
- 三上威彦, 基本的所有權留保と破産手續(上) 所有權留保研究, 季刊.
民事法研究 7, 1984. NO. 529, 臨時増刊 判例 タイムス
基本的所有權留保と破産手續(下) 所有權留保研究, 季刊.
民事法研究 8, 1984. NO. 536, 臨時増刊 判例 タイムス
- 根岸哲, 『訪問取賣における熟慮期間制度』, 神戸法學 21卷 3, 4号, 1972

藤田正次,『わか國における割賦販賣の現状と諸問題』,シユリスト,191号

竹内照夫,『割賦販賣と消費者保護-割賦販賣法改正と残された問題』,

石井先生追悼論文集,商事法の諸問題,有斐閣,1974.

『消費者信用と抗辯の切斷』,シユリスト, No. 664, 1978. 5. 15.

後藤義典,『新しい割賦販賣法の實施細目』,NBL. 32号

山田和彦,『改正割賦販賣法の特色と今後の方向』, NBL 18号

三島宗彦,『割賦販賣の特色』判例時報編輯部編, 民法基礎問題

150講II (債權), 東京, 一粒社, 1971

三宅正男,『賣買による所有權移轉の考え方』, 判例時報, 1982. 6.

西洋文獻

Larenz, Methodenlehre der Rechtswissenschaft, 3. Aufl, 1975

Lehrbuch des Schuldrecht Bd. II, 13. Aufl., 1982

Allgemeiner Teil des Deutsch bürgerlichen recht, 6. Aufl, 1983

Baur, Sachenrecht, 8. Aufl, 1975

Esser, Schuldrecht, Bd. II, Heidelberg, C.F. Muller Juristscher Verlag, 1976

Enneccerus-Nipperdey, Allgemeiner Teil des

Bürgerlichen Recht, 15. Aufl., 1960

Flume, die Rechtsstellung des Vorbehaltskäufers, Archiv

fur die Civilistische Praxis, 161. Band. 5, Helt, 1962.

Heck, Grundriss des Sachenrecht, 1960

Wolf, Lehrbuch des Schuldrechts, Bd. I, 1978

Westermann, Sachenrecht, 5. Aufl., 1973

Heinrich-Mayrhofer, Das Abzahlungsgeschäft nach dem neuen Ratengesetz,

- Spriger-Verlag, Wein. New-York, 1966
- Ostler-Weidner, Abzahlungsgeschäft, 6. Aufl., Berlin. New-York, 1971
- Georgiades, Die Eigentumsanwartschaft bei Vorbehaltskauf, 1963
- Vgl. Axel Gerlach, Änderung des Abzahlungsgesetzes, NJW, 1969
- Serik, Eigentumsvorbehalt und Sickerungsübertragung, Bd. I, 1963
- 영. 미국
- Seligmann, The Economics of Instalment Selling, Vol. I, 1965
- E. Allan Farnsworth, Instalment Sales, Internation Encyclopedia of
Comparative Law, volume VIII
- Affley, Business Law, Macdonald and Evans, 1982
- Atiyah, An Introduction to the Law of Contract, 3rd ed. Clarendon
Press. Oxford, 1981
- Borrie, Commercial Law, 4th ed., Butter worth, 1975
- Corman, Sale and Secured Financing, 1960
- Eugene Hafter, An Introduction to the Retail Instalment Sales Act,
Wake Forest Law Review, Vol. 8, No. 2, 1972
- J. R Mccall, Consumer Protection, American Casebook Series, 1977
- Robert Lowe, Commercial Law, 5th ed., Sweet & Maxwell, 1976
- Vold, Handbook of the Law of Sales, 2nd ed., 1959
- G. Ripert, Traité élémentaire de droit Commercial, 1970
- J. J. Burst. R. Kovar, Droiy de la concurrence, 1981

